영향평가 결과보고서

대표이사: 선영주



목차

1.사	업 개요 및 개인정보파일 운용의 목적3
1.1	사업명
1.2	추진 경과
1.3	대상 시스템의 개요
1.4	영향평가 투입인력 및 수행비용
1.5	개인정보파일 운용의 목적
2. 7	배인정보파일의 개요16
2.1	개인정보파일의 개요
3. 7	ㅐ인정보 흐름분석17
3.1	필요성 검토 결과
3.2	평가자료 수집
3.3	업무흐름 분석
3.4	업무흐름도
3.5	개인정보 흐름표
3.6	개인정보 흐름도
3.7	네트워크 구성도
3.8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4. 9	명향평가 결과35
4.1	영향평가 항목점검 결과
4.2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4.3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4.4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4.5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	
4.6 특정 IT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	
5. 위험평가	.50
5.1 위험평가 개요	
5.2 위험도 산정 결과	
5.3 개선방안 도출	
5.4 개선계획 수립	
5. 총평	.72
[별첨 1] 영향평가 평가항목 리스트	
[별첨 2] 개인정보 침해요인	
[별첨 3]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파악 보고서	
[별첨 4] 개인정보 영향도 등급표	
	4.4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4.5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 4.6 특정 IT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 - 위험평가 5.1 위험평가 개요 5.2 위험도 산정 결과 5.3 개선방안 도출 5.4 개선계획 수립 - 총평 - [별첨 1] 영향평가 평가항목 리스트 - [별첨 2] 개인정보 침해요인 - [별점 3]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파악 보고서

1

사업의 개요 및 개인정보파일 운용의 목적

1.1 사업명

도로교통혁신안전센터(ROADo)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1.2 추진 경과

본 영향평가의 경우, 도로교통혁신안전센터의 '교통망 클라우드 도입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사업'에 대해 실시하였다. 이에 대해 잠재적인 위협을 식별하고,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하여 대상시스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방안을 통해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평가 기간: 2024. 08. 02 ~ 2024. 08. 25

2) 평가 영역

-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
- 특정 IT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





3) 영향평가팀 운영계획 수립

- 영향평가 수행기관인 한라KPC 에서 대상 시스템에 대한 영향평가를 수행함
- 영향평가팀 구성

구분	내용			
대상사업명	도로교통혁신안전센터 교통망 클라우드 도입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사업			
작성자	영향평기	·팀		
	성명	소속/직급	담당업무	인증번호
	한아림	한라KPC/특급 기술자	- (PM) 사업 및 품질 관리 - 영향평가 점검항목 선정/검토 - 지침 및 내부 관리계획 검토	2004-019
영향평가팀	주 유	한라KPC/특급 기술자	- 개인정보침해요인 분석 - 기술자문	2009-023
구성	최정원	한라KPC/고급 기술자	- 개인정보 업무 & 흐름 분석 - 개선계획 도출	2014-111
	김상준	ROADo/개인정보보호담당자	- 평가 관련자료 수집, 제공 - 산출물 검토	2020-091
	이미수	ROADo/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평가 관련자료 수집, 제공 - 산출물 검토	2019-001
상세업무 정의	영향평가팀은 대상 시스템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제공 등의 단계에 서 추가, 변경 및 삭제가 예상되는 사항을 검토하여 영향평가 결과를 보고함 [평가팀의 세부역할] - 영향평가 수행 총괄 - 명향평가 수행 총괄 - 발주기관 담당자 협의 - 영향평가 수행원 - 대상기관의 영향평가 - 대상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흐름 분석 및 영향평가 항목에 대한 점검, 평가 -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등 필수산출물 작성 - 대상시스템의 침해요인 및 개선방안 도출 - 발주기관 담당자 협의			
운영 계획	· 산출물 품질검토 및 교육 - 영향평가팀은 영향평가 대상시스템의 평가 시 이슈 및 검토사항에 대하여 대상기관과 협의를 위해 수시 회의 운영 - 영향평가에 대한 축보한 이겨 스력을 통해 자체 건트 한모별 개서받아 도축			
추진 일정	- 영향평가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렵을 통해 자체 검토 항목별 개선방안 도출 - 전체 추진일정 2024. 08. 02 ~ 2024. 08. 25 - 사전분석 - 영향평가 필요성 검토 & 계획서 작성 2024. 08. 02 ~ 2024. 08. 05			

- 영향평가 실시
- · 평가자료 수집 및 분석 2024. 08. 06 ~ 2024. 08. 08
- · 개인정보 흐름분석 2024. 08. 09 ~ 2024. 08. 14
- · 영향평가 점검 표 작성 및 점검 수행 2024. 08. 15 ~ 2024. 08. 16
-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2024. 08. 17 ~ 2024. 08. 18
- · 개선방안 도출 및 개선계획 수립 2024. 08. 19 ~ 2024. 08. 20
- 영향평가 결과정리
- · 보고서 작성 2024. 08. 21 ~ 2024. 08. 22
- · 인계 준비 및 산출물 검토 2024. 08. 23 ~ 2024. 08. 25

[표 1] 영향평가팀 운영계획 수립

(출처) 한라KPC 영향평가팀

4) 영향평가팀 수행계획 수립

● 평가목적

- 도로교통혁신안전센터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관리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연계 또는 취급 절차상 변경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 및 기관의 이미지 실추, 법률 위반 등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보시스템 구조 변경 및 클라우드 도입 중에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

● 평가 대상 및 범위

- 평가대상: 도로교통혁신안전센터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 평가범위: 도로교통혁신안전센터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및 [교통망 클라우드 도입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사업] 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요인

● 평가 절차

- 대상기관의 대상시스템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영향평가 수행안내서'를 기준으로 평가기관인 한라KPC 기관에서 평가하였음

	단계	수행 내용	평가방법	
	타당성 조사	대상시스템이 수집/이용/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대한 영향평가 필요성 여부 판단	PIA 의무대상 여부 확인	
계획	평가수행 조직 구성	- 평가기관의 PIA 조직구성 확인 - 대상기관의 PIA 수행조직 구성 확인	대상기관 PIA 운영계획서 및 수행계획서 확인	
	평가계획 수립	평가기관의 PIA 수행계획서 작성	-	
	평가자료 수집	- 대상기관의 PIA 관련 개인정보보호 법규 및 상위 기관의 지침과 내부규정 현황 검토 - 당해 사업 이해 및 분석을 위한 평가자료 검토	대상기관의 자료요청 목록 확인 및 담당자 인터뷰	
분석	개인정보 흐름 분석	- 대상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 현황 산출물 타당성 및 운영 시스템 검토	- 개인정보취급 - 업무표업무 - 흐름도개인정보	
	개인정보 흐름 문식	- 대상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흐름 관련 산출물 타당성 및 운영 시스템 검토	- 흐름표개인정보 - 흐름도시스템 - 구성도담당자 인터뷰	
	평가수준 진단	대상 시스템에 대해 평가영역별로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	대상기관의 영향평가 항목점검표를 확인하여, 이를 기준으로 영향평가 수행	
평가	위험평가	대상 시스템에 대해 평가 및 침해요인에 따른 위험도 산정	담당자 인터뷰, 영향평가 항목점검표 및 개인정보 흐름분석을 통한 위험평가 실시	
	개선방안 도출	대상 시스템에 댛나 침해요인별 위험도 측정결과에 대한 개선방안 수립	평가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요인별 개선방안 작성	
보고	개선(이행) 계획 수립	대상 시스템에서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요소 및 개선방안에 대해 위험도가 높은 순서로 개선방안에 대한개선계획 수립	담당자와 개선계획 일정 인터뷰를 통해 평가기관의 개인정보 개선계획 수립	
	PIA 보고서 작성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평가기관의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표 2] 영향평가팀 수행절차

● 주요 평가사항

- 당해 사업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적인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
- 취급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생명 주기에 침해우려 발생 가능성 여부
- 영향평가 점검 표 기준으로 영향평가 결과 주요 침해사항 여부

●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참고
- 영향평가 수행 방법론(한라KPC의 SYS 방법론)
- 점검 표 평가항목 기준으로 침해요인 분석 후 개선계획 수립

● 자료수집 및 분석 계획

- 영향평가팀이 대상기관의 자료요청목록 요청 및 확인 검토
- 대상기관의 부서별 요청항목

부서명	담당자	요청사항	비고
교 <mark>통디지</mark> 털본부	김영진	- 개 <mark>인</mark> 정보보호책임자의 수행업무 확인	자료수집, 면담
ICT 운영처		- <mark>영향평가</mark> 점검내용 검토	
교통디지터보브		- 네 <mark>트</mark> 워크 및 시스템 구성 내역 관련	漢
교통디지털본부	김윤정	자 <mark>료</mark> 제공	자료수집, 면담
ICT 운영처		- 시스템 운영 현황 확인	48
기획본부	기미저	- 고정형 여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지크스지 머다
예산처	지민정	운영현황 확인	자료수집, 면담
		-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관련	
교투디지터보브		자료 제공	
교통디지털본부 정보보호처	이미수	- 정보보호시스템 구성 내역 현황 관련	자료수집, 면담
0777		자료 제공	
		- 영향평가 점검내용 검토	
교통디지털본부	김상준	- 기술 & 물리적 보호대책 수립 현황	지구스지 며다
정보보호처	급증正	- 영향평가 점검내용 검토	자료수집, 면담

[표 3] 자료수집 및 면담대상 현황

● 평가결과 처리

- 도출된 침해요인에 대해 개선방안 수립 및 사업기간 내 개선조치 가능한 사항에 대해 서는 개선조치를 이행하고, 중장기적으로 이행해야 할 과제는 개선계획을 수립
- 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상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제출 (단계별 산출물은 전자파일로 별도 제출함)

5) 평가 기준

●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영향평가 항목"과 도로교통혁신안전센터의 개인정보보호 현황을 고려하여 5개 평가영역, 27개 평가분야, 98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함

평가영역	평가분야	세부분야
	4.4 게이저나나ㅎㅜ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지정
	1.1 개인정보보호조직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역할수행
1.	1.2 개인정보보호 계획	내부 관리계획 수립
대상기관 개인정보	1.2 개인정보보호 계획	개인정보보호 연간 계획 수립
기한영로 보호관리	1.3 개인정보 침해대응	침해사고 신고방법 안내
포로인디 체계	1.3 개인영보 검애네중 	유출사고 대응
\\\\\\\\\\\\\\\\\\\\\\\\\\\\\\\\\\\\\\	1.4 정보주체 권리보장	정보주체 권리보장 절차 수립
	1.4 경보구세 전디모영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법 안내
	2.1 개이저 비친그지 교리	개인정보취급자 지정
2.	2.1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및 감독
대상시스템의	2.2 케이저브파이 교리	개인정보파일 대장 관리
개인정보보호	2.2 개인정보파일 관리	개인정보파일 등록
관리체계	22 개이저나 됩니바치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2.3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
	21 스지	개인정보 수집의 적합성
	3.1 수집	동의받는 방법의 적절성
	3.2 보유	보유기간 산정
2		개인정보 제공의 적합성
3. 개인정보	3.3 이용 및 제공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제한
기한영모 처리단계별		제공시 안전성 확보
시니단계 글 보호조치		위탁사실 공개
エエエハ	3.4 위탁	위탁 계약
		수탁사 관리 및 감독
	3.5 파기	파기 계획 수립
	3.3 -1	분리보관 계획 수립

		파기대장 작성
		게정 관리
	4.1 접근권한 관리	인증 관리
	6000	권한 관리
		접근통제 조치
	 4.2 접근통제	입단성 # _
		업무용 모바일기기 보호조치
		저장 시 암호화
	4.3 개인정보의 암호화	전송 시 암호화
4.		접속기록 보관
 대상	 4.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접속기록 점검
시스템의		접속기록 보관 및 백업
기술적		백신 설치 및 운영
보호조치	4.5 악성 프로그램 등 방지	보안 업데이트 적용
		출입통제 절차 수립
	4.6 물리적 접근 방지	반출입 통제절차 수립
	 4.7 개인정보의 파기	안전한 파기
		개발환경 통제
	 4.8 기타 기술적 보호조치	개인정보 처리화면 보안
		출력 시 보호조치
	4.9 개인정보 처리구역보호조치	보호구역 지정
		고정형 영상정보처기기기 설치 운영계획 수립
		고정형 영상정보처기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
	5.1 고정형 영싱정보처리기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사용 제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위탁 漢
_	F 2 DEID	拏
5.	5.2 RFID	-
특정 IT기술 활용 시	5.3 생체인식정보	원본정보 보관 시 보호조치
월 등 시 개인정보보호	ᄗᄼᅅᆛᄍᆸ	
게한영포포포	5.4 위치정보	-
	rr 기명정보	가명정보의 처리
	5.5 가명정보	가명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등
		영상정보 촬영 및 안내
	5.6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 촬영 및 사용제한
		영상정보 촬영 및 관리에 대한 위탁
	5.7 자동화된 결정	-

[표 4] 평가기준

6) 영향평가 점검항목 조정

● 점검항목 조정 요약

78	점검항목 수				ul ¬
구분	조정 전	추가	제외	조정 후	비고
대상기관 관리체계	10	0	0	10	-
대상시스템 관리체계	6	0	0	6	-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25	0	0	25	-
기술적 보호조치	36	0	0	36	-
특정 IT 기술 활용	31	0	10	21	-
합계	108	0	10	98	-

[표 5] 점검항목 조정 요약표

(출처) 한라KPC 영향평가팀

● 점검항목 조정 요약

구분		추가 또는 제외 항목	추가 또는 제외 사유
TE	코드	내용	구기 포는 세괴 시ㅠ
		RFID 태그에 기록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5.2. <mark>1</mark>	이용자에게 통지하거나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계획 <mark>하고 있</mark> 습니 <mark>까?</mark>	
		RFID 태그 <mark>의</mark> 물품 <mark>정</mark> 보 등과 개인정보를 연계하는	
	5.2.2	경 <mark>우</mark> 그 사실을 <mark>이용</mark> 자에게 통지하거나 알기 쉽게	盘
		표 <mark>기하도록 계획하고</mark> 있습니까?	庆 奴
		RFID 태그의 물품정보 등과 개인정보를 연계하여	。
	5.0.0	생성된 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5.2.3	제공할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계획하고	디사 시스템으 prib
		있습니까?	대상 시스템은 RFID
항목 제외		RFID 태그에 기록된 개인정보를 판독할 수 있는	태그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해당 항목은
	5.2.4	리더기를 설치한 경우 설치 사실을 이용자가	
		인식하기 쉽게 표기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	해당 사항이 없음
		구입 및 제공받은 물품에 RFID 태그가 내장 및	
	5.2.5	부착되어 있을 경우 부착 위치, 기록정보 및 기능에	
		대해 표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	
		RFID 태그가 내장 및 부착되어 있는 경우 판매 혹은	
	5.2.6	제공하는 자로부터 태그 기능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	
	5.2.7	이용자의 신체에 RFID를 지속적으로 착용하지 않도록	
	5.2.7	계획하고 있습니까?	

		개인위치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 또는 위치정보	
	5.4.1	수집장치 소유자에 대해 사전고지와 명시적 동의를	대상 시스템은
		거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를 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수집 및 사용하지
	F 4.3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않으므로, 해당 항목은
	5.4.2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통보하도록 계획하고	해당 사항이 없음
		있습니까?	
			대상 시스템에서는
			자동화된 결정이
	5.7 전체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해당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음

[표 6] 점검항목 조정 내역 현황표



1.3 대상 시스템의 개요

1) 사업명

● [교통망 클라우드 도입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사업]

2) 사업추진 목표

- 본 기관에 교통망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네트워크 개선(컨설팅 요청사항 1번)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처리 체계 변경이 발생하게 되었음
- 따라서 변경이 발생한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데이터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본 사업의 추진 목표임

3) 사업 추진 일정

2024. 08. 02 ~ 2024. 08. 25

4) 사업 추진 예산

1억 5000만원 (부가세 포함)

5) 사업 내용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 2021년 7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행정·공공기관 정보자원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전환·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모든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이 클라우드 기반 통합관리 운영 환경으로 전환되어 다양한 국민수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예정
- 도로교통혁신안전센터는 스마트 신호등 도입을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앞선 정부의 계획에 맞춰 일부 정보자원을 클라우드로 전환·통합할 예정
- 우선적으로, AI 스마트 신호등이 적용될 교통망에 대해 클라우드로 도입하고자 하며, 이에 맞게 클라우드 도입될 본 센터의 네트워크 망을 보완하고 변경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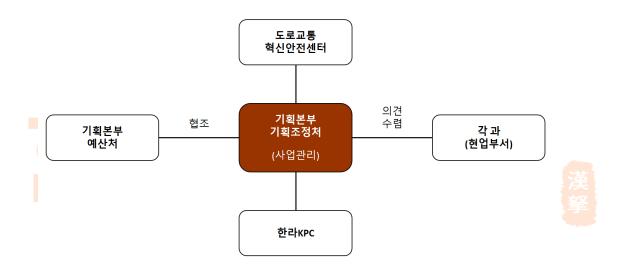
● 이 과정에서 본 센터는 네트워크 구성의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변동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을 변경함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의 필요성을 느낌

나) 사업추진 범위

-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 네트워크 시스템의 고도화
- 교통망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계획 수립
- 현 개인정보보호 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다) 사업 추진 체계

● 사업 추진 조직도



구분		역할 및 책임
기획조정처	전담기관	- 사업진행 총괄 - 사업추진관련 기관간의 의견 조정
도로교통혁신안전센터 (각 과)	지원부서	- 서립구년년인 기년인의 의단 포칭 - 서비스 이용자 & 운영자 - 요구사항제시 - 도입 기능 검증 - 통합 시험 참여
한라KPC 주관사업자		- 사업 이행 총괄 진행 - 사업 산출물 생산 - 컨설팅 요구사항 관련 기술지원

1.4 영향평가 투입인력 및 수행비용

1) 영향평가 투입인력

단계	평가분야	소요 일수	투입인원	세부일정	투입공수
	영향평가 필요성 검토				
사전 분석	팀 구성 및 운영계획서 작성	4일	3(특급 2/고급 1)	2024. 08. 02 ~ 2024. 08. 05	12MD
Ŀ¬	평가 계획 수립			~ 2024. 00. 03	
	평가자료 수집 및 분석	3일	3(특급 2/고급 1)	2024. 08. 06 ~ 2024. 08. 08	9MD
	개인정보 흐름 분석	6일	3(특급 2/고급 1)	2024. 08. 09 ~ 2024. 08. 14	18MD
영향 평가	영향평가 평가항목 작성 및 점검	2일	3(특급 2/고급 1)	2024. 08. 15 ~ 2024. 08. 16	6MD
경기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산정	2일	2(특급 1/고급 1)	2024. 08. 17 ~ 2024. 08. 18	4MD
	통제항목 도출 및 개선방안 도출	2일	2(특급 1/고급 1)	2024. 08. 19 ~ 2024. 08. 20	4MD
결과	개선계획 및 결과 보고서 작성	2일	3(특급 2/고급 1)	2024. 08. 21 ~ 2024. 08. 22	6MD
정리	결과보고서 협의 및 조정	201	2/트ユ 2/コユ 1)	2024. 08. 23	OMD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3일	3(특급 2/고급 1)	~ 2024. 08. 25	9MD
	영향평가 투입 일수		총	24일, 68MD	

[표 7] 영<mark>향</mark>평가 수행인력 투입내역



- ※ 투입판단근거 : 해당시스템의 규모·복잡도 등을 고려하였음
- => 운영사업비 1억 5천만원, 개인정보 파일 수 13개, 사업 종류 5개, 개인정보 취급자 수 7명, 처리 정보주체 수 약 4000만명

2) 영향평가 수행비용

● 수행비용 : 1억 5000만원(₩150,000,000) 부가세 포함

구분	기술자 구분	노임단가(원)	투입인원(명)	투입공수 (M/M)	적용금액(원)	비고
인건비	컨설턴트	2,500,000	3	5.67	42,525,000	특급, 고급 혼합
[원산미		소	42,525,000	-		
7	제경비		인건비의 100%		42,525,000	인건비의 100%
기스크		(인건비+제경비)의 20%			17.010.000	(인건비+제경비)의
•	기술료	(21	[미+세성미)의 20	J <i>7</i> 0	17,010,000	20%
	소계					-
	부가세					10%
용역비 합계					112,266,000	-
기타 경비					37,734,000	-
	수행비용					0,000,000

[표 8] 영향평가 수행비용

(출처) 한라KPC 영향평가팀

1.5 <mark>개인정보파일</mark> 운용의 목적

- 도<mark>로교통혁신안전센터 홈페이지 이</mark>용자 관리 및 맞춤 서비스 제공
- 운전면허 시험 운영 및 면허 발급(임시면허 발급) 체계 운영
-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 교육 사업



개인정보파일의 개요

2.1 개인정보파일의 개요

2

개인정보파일 운용 공공기관 명칭						
부서명			정보보호처	취급담당자	이미수	
업무분		교통안전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DADo 백업 DB(센터	 내 개인정보 유관 파일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정보주체동의(홈페(기지 이용약관 및 별도	동의서 작성)	
		● 선	 L터 홈페이지 이용자	관리 및 맞춤 서비스	제공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목적	● 운	· 전면허 시험 운영 및	면허 발급(임시면허	발급) 체계 운영	
		인 •	[†] 전한 교통환경 조성	을 위한 교통 교육 사업	겁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일, 생년월일, 아이디, ㅂ	비밀번호, IP주소,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상위	기관명, 소속기관명,	주민등록번호, 운전면여	허번호, 주소,	
개인정보의	항목	장애:	조건, 성별, 교육이수는	번호, 임용일, 진급일, 현	현 부서 이동일, 사진,	
		사번,	연령, 부서, 직종, 직	급, 근무이력, 학력, 경	력, 담당 업무	
개인정보의 기	대리방법		온라인 수집	(홈페이지 회원신청 등	·), 기타	
개인정보의 브	보유기간 -	센터	의 '개인정보관리방침'	및 [개인정보 포털]에	기재된 사항을 따름	
개인정보를 통상적	제공받는 자		해당 없음			
또는 반복적으로	근거	해당 없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쉐다 어이				
	범위	해당 없음				
개인정보파일로 보	L유하고 있는			4000만명		
개인정보의 정.	보주체 수			4000 E 8	All All	
해당	범위	정 <mark>호</mark> 보호처 소속 직원 중 개인정보보호팀 최고 책임자 외 3 <mark>인</mark>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공동사용부서	정보보호처				
담당하는 부서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 처리하는 부서			서울시 금천구 도로교통혁신센터(ROADo) 고객지원부서			
개인정보파일에서 열람을 제한하거나	보파일에서 개인정보의 람을 범위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비밀번호, IP주소, 상위기관명, 소속기관명,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장애조건, 성별, 교육이수번호, 임용일, 진급일, 현부서 이동일, 사진, 사번, 연령, 부서, 직종, 직급, 근무이력, 학력, 경력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사유	개인	!정보보호법 제 37조	2항에 의거하여 비밀	유지 필요	

[표 9] 개인정보파일 개요 (출처) 한라KPC 영향평가팀

3

개인정보 흐름분석

3.1 필요성 검토 결과

● 도로교통혁신안전센터의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의 경우 약 4000만명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유식별정보 또한 처리하고 있다. 또한 타 기관과 연계를 계획하며, 홈페이지 회원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No	질문	Y/N 또는 해당없음	내용
1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 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 또는 수반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Υ	4000만명의 정보주체에 관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2	해당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한 결과 50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 또는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Υ	-
3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 파일을 처리 또는처리가 예상됩니까?	Υ	-
4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 체계를 변경하려고 합니까?	Y	네트워크 구성 변화 및 교통망 클라우드 도입 등으로 인한 체계 변경 예상

[표 10] 영향평가 의무대상 여부 확인 표

3.2 평가자료 수집

1) 평가자료 수집 목적 및 종료

- 영향평가의 수행에 앞서 평가 대상 및 개인정보 정책 환경을 분석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수집함
- 분석 대상 자료는 기관 내・외부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 및 정책 환경 등을 분석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①내부 정책자료, ②외부 정책자료, ③대상시스템 설명자료 등으로 구분함

2) 내부정책 자료

● 조직 체계 자료

수집 목적	수집 자료	수집 기관
기관 내부의 개인정보보호 체계, 규정, 조직현황 파악	- 해당기관 & 개인정보보호조직 조직도 - 개인정보 사고대응 메뉴얼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개인정보 파기 지침 - 개인정보관리방침 및 개인정보시스템 보안 지침 -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 요구서 - 개인정보 흐름표 & 흐름도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대응 절차 및 백업 복구 계획 - 해당기관 업무분장표, 직무기술서 - 연간 개인정보보호 활동계획서 및 결과서	도로교통혁신안전센터

[표 11] 조직, 체계자료 목록

● 인적보안 및 교육자료

수집 목적	수집 자료	수집 기관
기관 내부의 개인정보취급자 및 위탁업체에 대한 내부규정 및 관리·교육체계 파악조직현황 파악	-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자체교육 계획 & 교육 결과 기술 자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개인정보처리 위탁업체/제3자 목록 - 개인정보 취급자 명단(기관 전체 및 대상 시스템)	도로교통혁신안전센터

[표 12] 인적 통제, 교육자료 목록

(출처) 한라KPC 영향평가팀

● 시스템 구성 및 보안 관련 자료

수집 목적	수집 자료	수집 기관
시스템 구조와 연계된 개인정보보호기술 현황 파악	- 네트워크 & 시스템 구성도 - 외부 방문자 출입관리대장 - 영상정보관리대장 - 영상물요청서 - 문서생명주기 - CCTV 안내문 및 배치도 - 출입카드발급대장	도로교통혁신안전센터

[표 13] <mark>인</mark>적 통제, 교육자료 목록

(출처) 한라KPC 영향평가팀

3) 외부정책 자료

● 대상기관 관련 법률

수집 목적	수집자료	수집기관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관한 고시	영향평가팀
법률 등 환경 분석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000/16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기본 지침	

[표 14] 공공기관 관련 법률 목록

●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수집 목적	수집자료	수집기관
소속기관의 규정 및 지침 분석	- 상급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지침/가이드	도로교통혁신안전센터

[표 15]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목록

(출처) 한라KPC 영향평가팀

4) 대상시스템 설명 자료

● 사업관리 자료

수집 목적	수집자료	수집기관
	- 제안요청서(RFP)	
	- 컨설팅 착수 보고서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 제안참가 서약서	드그그트쉬 나이된 베티
양과 범위가 사업수행을 위해 적절한지 파악	- 가격제안서	도로교통혁신안전센터
	- 공정계약 이행 확인서	
	- 비밀유지확약서	



● 시스템 관련 자료

수집 목적	수집자료	수집기관
시스템 개발(운영) 분석	- 요구사항 정의서 - 업무 흐름도 (개인정보보호 측면 포함)	도로교통혁신안전센터

[표 17] 개발 및 운영 산출물 목록

3.3 업무흐름 분석

1) 목적

● 본 사업의 모든 업무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평가 대상 사업의 업무를 분석하여 개인정보취급이 수반되는 업무를 구분하고 각 업무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식별함

2) 정보주체

● 도로교통혁신안전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 포함)

3) 개인정보취급자

- 도로교통혁신안전센터 개인정보보호 조직도 내 개인정보보호팀 개인정보보호담당자 3인 (오수현, 이엽종, 전환명)
- 도로교통혁신<mark>안</mark>전센터 개인정보보호 업무처리 수탁사 4종 & 제 3자 제공이 이루어지는 2개 조직의 개인정보 관리직원

4) 시스템 평가 범위

● 도로교통혁신안전센터 개인정보보호 처리 시스템 전 범위

5) 개인정보 취급 업무표

● 도로교통혁신안전센터 개인정보보호 처리 시스템 관련 개인정보 취급 업무는 아래와 같음

평가 업무명	처리 목적	처리 개인정보	주관부서	개인정보건수	개인정보영향도
운전면허	운전면허와국제운전 면허의 발급,갱신 및 관리 운전능력평가 (적성검사) 및 인증 운전면허 취득에 관 한서비스 제공	필수: 이름, 주소, 성별,연락처(전화 번호 또는이메일), 주민등록번호기존 운전면허 발급자 대상: 운전면허번 호	운전면허 본부 면허 관리처	3700만건	5
교통교육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및교육 신청, 관리 교육이수 확인 및 교육 관련정보 제공 교육 서비스개선을 위한 통계 분석및 설문 조사 기타 교 육관련 행정업무 처 리	필수: 이름, 생년 월일,성별, 연락처 (전화번호또는 이 메일),주민등록번 호음주운전, 고령 교육자교육 대상: 교육이수번호,운전 면허번호	교육본주 교육 운영처	1000만건	5
교통교육 (오프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및교육 신청 관리 교육이수 확인 및 교육 관련정보 제공 교육 서비스개선을 위한 통계 분석및 설문 조사 기타 교 육관련 행정업무 처리	이름 <mark>, 생</mark> 년월일, 연락처	교육본주 교육 운영처	1000만건	5 楽

[표 18] 개인정보 취급 업무표

6) 개인정보 현황표

● 도로교통혁신안전센터 개인정보보호 처리 시스템 관련 개인정보 현황표는 아래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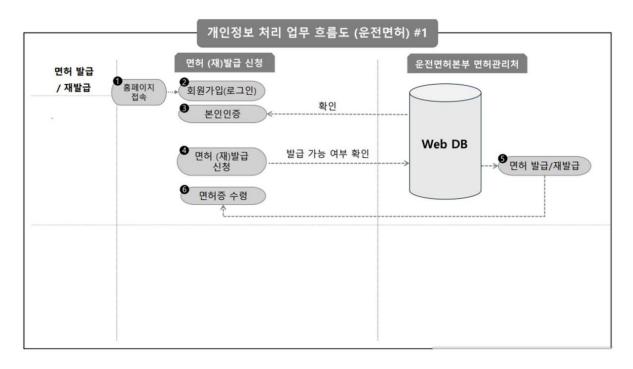
평가 업무	개인정보 처리항	개인정보 세부항목	수집 근거	필수/선택	수집 목적
	이름	-	정보주체 동의	필수	본인확인
	주소	-	정보주체 동의	필수	소재확인
O저대신	성별	-	정보주체 동의	필수	성별확인
운전면허	연락처	-	정보주체 동의	필수	본인확인
	주민등록번호	-	정보주체 동의	필수	본인확인
	운전면허번호	-	정보주체 동의	필수	본인확인
	이름	-	정보주체 동의	필수	본인확인
	생년월일	-	정보주체 동의	필수	본인확인
7 = 7 0	성별	-	정보주체 동의	필수	성별확인
교통교육	연락처	-	정보주체 동의	필수	본인확인
(온라인)	주민등록번호	-	정보주체 동의	필수	본인확인
	교육이수번호	-	정보주체 동의	필수	교육 이수 확인
	운전면허번호	-	정보주체 동의	필수	본인확인
7 = 7 0	이름	-	정보주체 동의	필수	본인확인
교통교육	생년월일	-	정보주체 동의	필수	본인확인
(오프라인)	연락처	-	정보주체 동의	필수	본인확인

[표<mark> 1</mark>9] 개인정보 현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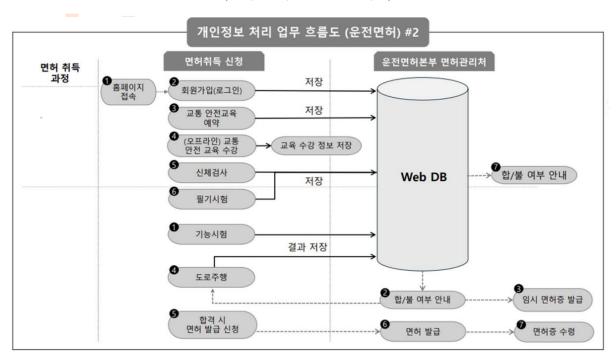
3.4 업무흐름도

● ROADo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의 업무흐름도는 다음 그림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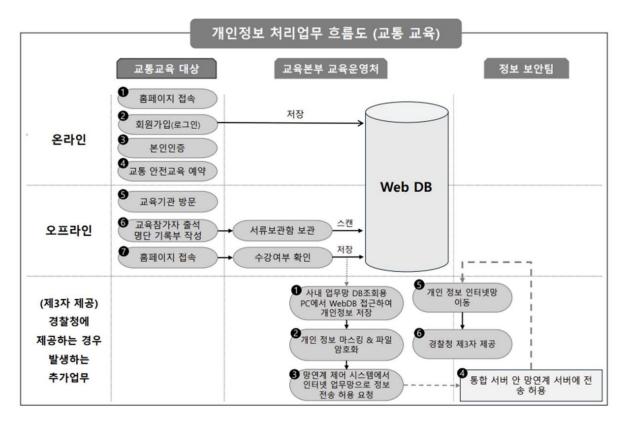


[그림 1] 업무흐름도 - 운전면허 발급/재발급

(출처: 한라KPC 영향평가팀)



[그림 2] 업무흐름도 - 운전면허 취득



[그림 3] 업무흐름도 - 교통 교육



3.5 개인정보 흐름표

● 도로교통혁신안전센터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수집단계 개인정보 흐름은 아래와 같음

어모면	수집								
업무명	수집항목	수집경로	수집대상	수집담당자	수집근거				
운전면허	(필수) 이름, 주 소,성별, 연락처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주민등 록번호(기존 운 전면허발급자 대상)운전면허 번호	필수) 이름, 주 소,성별, 연락처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주민등 온라인(홈페이 운전면허 발급 루번호(기존 운 지) 및 시험 신청자 전면허발급자 대상)운전면허		-	이용자 동의/도 로교통법제87조 의3				
교통교육	(필수) 이름, 생 년월일,성별, 연 락처(전화번호 또는이메일),주 민등록번호(음 주운전,고령 교 육자교육 대상) 운전면허번호	온라인(홈페이 지)	교통교육 신청 자	-	이용자 동의/도 로교통법제87조 의3				
	이름, 생년 <mark>월일,</mark> 연락처	오프 <mark>라인</mark> (교육 참석자 명단)	오프라인 교육 참석자	교육본부교육운 영처	이용자 동의				

[표 20] <mark>개</mark>인정보 흐름표(수집단계)



● 도로교통혁신안전센터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보유/이용단계 개인정보 흐름은 아래와 같음

		보유/이용									
업무명	보유 형태	암호화 항목	이용 목적	이용 항목	개인정보 취급자	이용 방법					
운전면허	Web DB	주민등록번호,운 전면허번호비밀번 호(일방향)	- 운전면허와국제 운전면허의 발급 - 갱신 및 관리 운전능력 평가(적 성검사) 및인증 - 운전면허취득에 관한서비스 제공	(필수) 이름, 주소,성별, 연 락처(전화번 호 또는이메 일),주민등록 번호(기존운 전면허발급 자 대상)운전 면허번호	운전면허본부 면허관리처	관리자 홈페이지					
교통교육	Web DB	주민등록번호 ,운 전면허번호비밀번 호(일방향)	- 교육 콘텐츠제 공 및 교육신청 관리 - 교육 이수확인 및 교육관련 정보 제공 - 교육 서비스개 선을 위한통계 분 석 및설문 조사	(필수) 이름, 생년월일,성 별, 연락처 (전화번호 또 는이메일),주 민등록번호 (음주운전,고 령 교육자교 육 대상)운전 면허번호	교육본부 교육 운영처	관리자 홈페이지					
L	Web DB, 캐비닛		- 기타 교육관련 행정업무	이름, 생년월 일,연락처	7	서류보관함					

[표 21] 개인정보 흐름표(보유, 이용단계)

● 도로교통혁신안전센터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파기단계 개인정보 흐름은 아래와 같음

어므램	파기							
업무명	보관기간	파기담당자	파기절차					
운전면허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동안 보유하며, 유효기간이만료되거나 운 전면허가 취소될 경우,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 (다만 법령에 의해 보존이 필요할 경우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존)	DB 관리자	일단위 DB 파기					
교통교육	교육 프로그램 종료일로부터 2년 (다만 법령에 의해 보존이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존	DB 관리자	일단위 DB 파기					
	Web DB 입력 후 스캔 후 파기	교육본부 교육 운영처	주단위 문 서 절단					

[표 22] 개인정보 흐름표(파기단계)

(출처) 한라KPC 영향평가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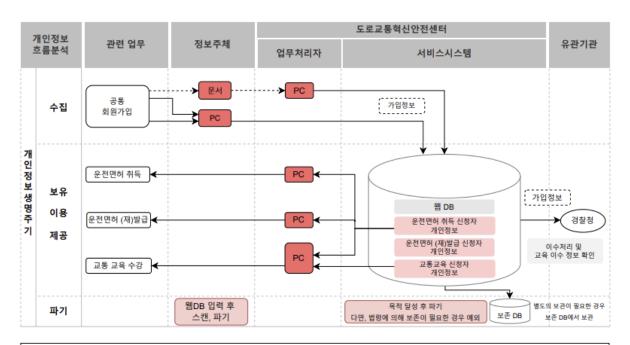
● 도로교통혁신안전센터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제공단계 개인정보 흐름은 아래와 같음

					보유/이용			
업무명	제공	제공	수신	제공	제공	제공	암호화	제공
	목적	자	자	정보	방법	주기	여부	근거
교통교육	이수 처리 및 교육 이수 정보 확인	유 보 보 육 운 차	경찰청	전 하 호, 민 록 호, 명 번 전 등 번 성	- DB조회용 PC에서 Web DB에 접근, 가져온정보를 마스킹 - 망연계 제어시스템에서인터넷 업무망으로 옮기는 것을 요청 - 보안팀이이를 허용 - 정보인터넷 망이동 후경청청 전송	상시	통신 구간 암호화	개인정 보보호 법 제17조 및 제18조

[표 23] 개인정보 흐름표(제공단계)

3.6 개인정보 흐름도

● 도로교통혁신안전센터 개인정보처리 관련 시스템의 총괄 개인정보 흐름도는 아래와 같음



[가입정보]

용전면허 취득 신청자: 이름, 주소, 성별,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교통교육신청자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처리흐름]

수집 공통 회원 가입을 통해 회원 정보가 PC에 저장된다, (오프라인)교통 교육의 경우, 현장에서 참석자의 개인정보를 문서 형태로 수집하며 이는 웹DB에 저장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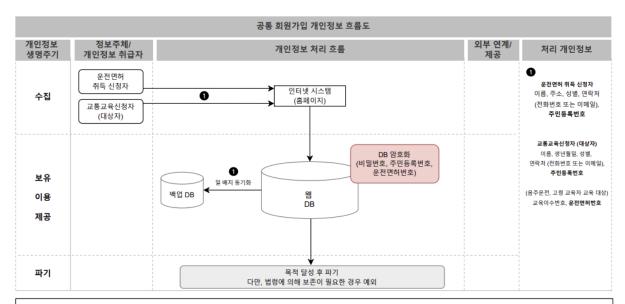
모든 정보는 웹DB에서 관리한다.

보관하는 정보로는 1)운전면허 취득 신청자 개인정보, 2)운전면허 (재)발급 신청자 개인정보, 3)교통교육 신청자 개인정보 이는 각각 1)운전면허 취득, 2)운전면허 (재)발급, 3)교통교육 수강 업무에 이용된다.

교통교육 이수 정보 확인을 위해, 교통 교육 수강 업무에 활용된 개인정보 중 일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가 경찰청에 제3자 제공된다.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 보존 DB에서 보관하며, 이와 법령에 의해 보존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웹DB에 저장되어 있던 모든 정보는 목적 달성 후 파기된다. (오프라인)교통 교육에서는 문서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이 정보를 웹DB에 입력한다. 이후 스캔, 파기한다.

[그림 4] 개인정보 흐름도 - 총괄



[처리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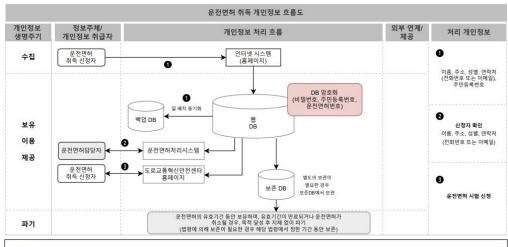
수집 운전면허 취득 신청자 와 교통교육 신청자(대상자)는 인터넷 시스템(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한다. (교통교육신청자 중 이미 계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원가입이 아닌, 로그인을 한다)

보유/이용 회원가입을 통해 수집한 정보는 UTM을 거쳐서 DBzone에 위치한 웹DB와 백업DB에 동시에 저장된다.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 번호는 암호화한다.

파기 법령에 의해 보존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한다.

[그림 5] 개인정보 흐름도 - 공통 회원가입





[처리흐름]

수집 운전면허 취득 신청자는 회원가입 후, 인터넷 시스템(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을 신청(예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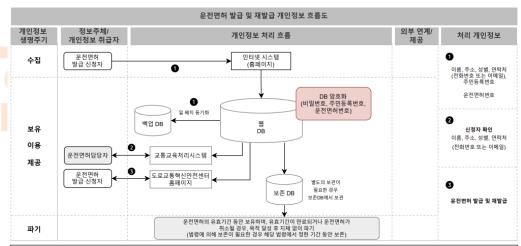
보유/이용 수집한 정보는 UTM을 거쳐서 DBzone에 위치한 웹DB와 백업DB에 동시에 저장된다.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히 번호는 암호화한다.

운전면허 담당자는 운전면허 처리시스템에서 운전면허 신청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 취득 신청자는도로교통혁신안전센터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신청, 변경할 수 있다.

파기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 보존 DB에서 보관하며, 이와 법령에 의해 보존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웹DB에 저장되어 있던 모든 정보는 목적 달성 후 파기된다.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동안 보유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해 지체없이 파기한다.

[그림 6] 개인정보 흐름도 - 운전면허 취득

(출처) 한라KPC 영향평가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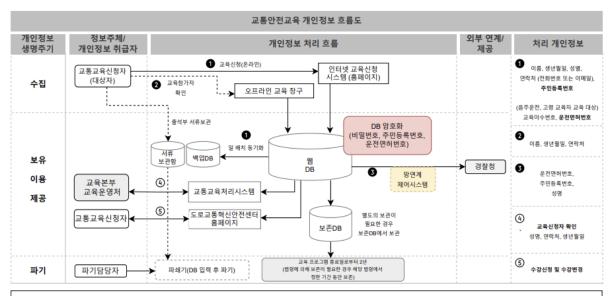
[처리흐름]

· 운전면허 발급 신청자는 인터넷 시스템(홈페이지)를 통해 로그인 한다.

보유/이용 회원가입을 통해 수집한 정보는 UTM을 거쳐서 DBzone에 위치한 웹DB와 백업DB에 동시에 저장된다.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 번호는 암호화한다.

. 온전면허 담당자는 운전면허 처리시스템에서 운전면허 발급 신청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 발급 신청자는도로교통혁신안전센터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 발급을 신청, 변경할 수 있다.

[그림 7] 개인정보 흐름도 - 운전면허 발급 및 재발급



[처리흐름]

수집 교통교육신청자(대상자)는 인터넷 시스템(홈페이지)를 통해 로그인 한다. 인터넷 시스템(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을 한다. 교통교육 당일에는 오프라인 교육 창구에서 교육 참가자를 확인한다.

도구/이용 교육 신청에 대한 정보는 UTM을 거쳐서 DBzone에 위치한 웹DB와 백업DB에 동시에 저장된다. 오프라인으로 수집한 정보는 서류보관함에 출석부 서류가 1차 저장되며, 이는 스캔 후 웹DB와 백업DB에 저장된다.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 번호는 암호화한다.

. 교육본부 교육운영처는 교통교육 처리시스템에서 운전면허 교육신청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교통교육 신청자는도로교통혁신안전센터 홈페이지에서 교통교육을 수강 신청, 변경할 수 있다.

제공 경찰청에 교육이수확인을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를 제3자 제공한다. 웹DB에 저장된 정보는 사내업무망에 위치한 DB 조회용 PC를 사용한다. 제공을 위해 가져온 정보는 마스킹 후, 파일 암호화한다. 망연계제어시스템에서 인터넷 업무망으로 파일 전송 허용을 요청하면, 보안팀은 통합서버 안 망연계 관리서버에서 파일 전송을 수락한다. 정보가 인터넷망으로 이동하며 경찰청에 전송된다.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동안 보유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해 지체없이 파기한다.

<mark>[그림 8] 개인</mark>정보 흐름도 – 교통안전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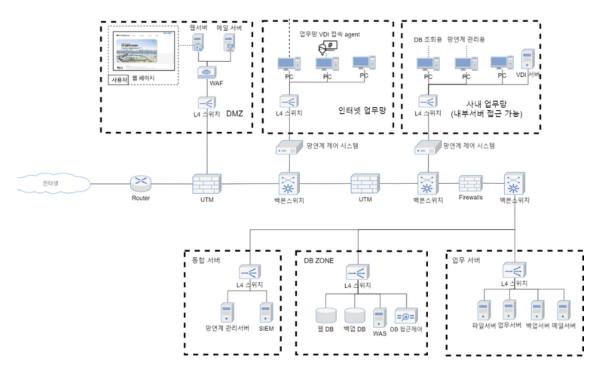
온라인

오프라인

·····

3.7 네트워크 구성도

● 도로교통혁신안전센터 개인정보처리 관련 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성도는 아래와 같음



[그림 9] 네트워크 구성도



3.8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 도로교통혁신안전센터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의 개인정보 흐름도는 아래와 같음

五 성	자산 번 호	유형	OS	적용 솔루 션명	목적 및 용도	적용 대상	총 대 수	본 사업 범위 여부
1	SE-21- 012	방화벽	windows 2012	SuhoGod FW v4.0 - 인터넷과 내부 네트워 및 문 크 분리 및 접근통		사내 업무 망, 인터넷 업무망, 서 버팜, DB ZONE	1	0
2	SW-21- 013	웹 방화벽 (WAF)	windows 2012	SuhoGod FW v4.0	- 웹서버에 대해 HTTP 서비스 해킹 방어	DMZ	1	Ο
3	SE-21- 013	UTM	windows 2012	s SuhoGod - 인터넷, 내부 네트유 FW v4.0 분리		내부 업무망 앞단	1	0
4	SE-21- 014	UTM	windows 2012	SuhoGod FW v4.0			1	0
5	-	DB접근 제어	-	DB - DB 계정 관리, 접근통 'Security v2.0 '제, 개인접속 기록 저장		백업 DB, 웹 DB	-	0
6	SV-21- 009	VDI 서 버	windows 2012	secuos for windows	-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 제공,중앙에서 관리되는 안전한 접근제공	사내 업무망 내부	1	0
7		망연계 제어시 스템	_	Core <mark>Br</mark> idge	- 보안 등급 간 안전한 데이터 연계및 전송 관 리	내부 업무 망, 외부망	-	地解
8	-	SIEM	windows 2012	AlienVault - 통합 보안 이벤트 모 USM 니터링 및실시간 위협 대응		통합 서버 내부	-	Ο
9	USB-23- 001 ~USB- 23-032	보안 USB	Sandisk UltraDual Go 3.1	S-USB Plus	- 개인정보 파일 등 저 장 및 전달	각 부서 사용자	32	0

[표 24] 정보보호시스템 목록

(출처) 한라KPC 영향평가팀 & 도로교통혁신안전센터

영향평가 결과

4.1 영향평가 항목점검 결과

- 도로교통혁신안전센터 개인정보 관련 시스템 평가영역은 총 5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영향평가 결과, 전체 이행율은 64.78%임
- ※ 전체이행율 = (50+19*0.5)/(50+19+23) = 64.78%
- 대상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영역은 개인정보보호조직, 개인정보보호 계획 등 전반적인 평가분야에서 미흡한 사항이 발견됨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 영역은 수집, 이용·제공, 파기 분야에서 취약사항이 있는 것으로 평가함
-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 영역은 전적으로 양호하나, 부분 미흡한 상태로 평가됨
- 특정 IT기술 활용 영역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활용분야는 미흡한 상황이 발견됨

퍼기어어	전기 HOL(전세)	지기계소	점검결과			
평가영역	평가분야(전체)	점검개수	Υ	Р	N	N/A
	1.1 개인정보보호 조직	2	0	2	0	0=
1.	1.2 개인정보보호 계획	3	0	2	1	0
대상기관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1.3 개인정보 침해대응	2	2	0	0	0
	1.4 정보주체 권리보장	3	0	1	2	0
2.	2.1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2	0	1	1	0
대상시스템의 개인	2.2 개인정보파일 관리	2	1	1	0	0
정보보호 관리체계	2.3 개인정보 처리방침	2	2	0	0	0
	3.1 수집	10	6	0	4	0
3.	3.2 보유	1	1	0	0	0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	3.3 이용·제공	7	2	2	3	0
조치	3.4 위탁	4	3	1	0	0
	3.5 파기	3	2	0	1	0
4.	4.1 접근권한 관리	10	6	2	2	0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	4.2 접근통제	7	6	0	1	0
조치	4.3 개인정보의 암호화	4	4	0	0	0
	4.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3	3	0	0	0
	4.5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2	2	0	0	0
	4.6 물리적 접근방지	2	2	0	0	0
	4.7 개인정보의 파기	1	0	1	0	0
	4.8 기타 기술적 보호조치	4	0	0	4	0
	4.9 개인정보처리구역 보호	3	3	0	0	0
	5.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6	2	0	3	1
	5.2 RFID	-	-	-	-	-
5. 트저다기스 하유시 게이저	5.3 생체인식정보	2	0	1	0	1
특정IT기술 활용시 개인정 보보호	5.4 위치정보	-	-	1	-	-
	5.5 가명정보	9	3	2	1	3
	5.6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4	0	3	0	1
	98	50	19	23	6	

[표 25] 평가분야별 이행 수준

(출처) 한라KPC 영향평가팀

● 도<mark>로교통혁신안</mark>전센터 개인정보 <mark>관</mark>련 시스템 영향평가 항목점검 상세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파악 보고서' 에서 확인 가능



4.2 대상 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1. 대상 기관 개인정	성보보호 관리체계	
질의문 코드	질의문	평가근거 및 의견	개인정보 침해요인	법적 준거성
1.1.1	개인정보 보호책임 자를 법령기준에 따 라 지정하고 있습니까?	본 센터는 기타 공공기 관으로, 개인정보처리업 무담당 부서장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해야 함.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최소 4년 (개인 정보보호 경력 최소 2년 포함) 경력을 보유해야하지만, 현 개인정보보호생임자 이미수씨는총 경력 5년 중 개인정보보호 경력이 1년으로지정 기준을 만족하지못함.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경력 부족으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위험이 증가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지정) 위반
1.1.2	개인정보 보호책임 자에게 법령 등에서 정하는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책화하고, 이에 근거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본 센터는 '개인정보관 리방침'과 '개인정보 시 스템 보안지침'에 개인 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역할을 명시하였으 나, 법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에게 지정해 야할 '개인정보보호 교 육 계획 수립 및 시행' 이 하위 개인정보 분야 별 책임자에게 할당되어 있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이 법령에 맞게 수행되지 않아 책임의 불명확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 관리가 소홀해져 침해위험이 증가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지정) 위반
1.2.1	개인정보의 분실·도 난·유출·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내부 의사결 정 절차를 통하여 필수 사항을 포함하 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 있 습니까?	본 센터는 '개인정보시 스템 보안 지침' 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이 수 립되어 있으나, 내부 관리계획서 내에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내용은 누락되어 있음.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 정보 보호책임자의 자 격요건이 누락되어 있 어, 책임자의 적격성 검증이 부족해지고, 이 로 인해 개인정보 보 호 관리가 미흡해질 위험이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제 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 전성 확보 조치) 위반
1.2.2	개인정보 보호책임 자는 접근 권한 관 리, 접속기록보관	본 센터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내부 관리계획 이행 실태 점검이 이루어지 지 않아, 개인정보 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점검, 암호화 조 방침'과 '개인정보시스템 호 조치가 제대로 이 치 등 내부 관리계 보안 지침'에 내부 관리 행되지 않을 위험이 [개인정보보	
획의 이행실태를 연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 있으며, 이로 인해 침 시행령] 제30조(개인정 한 개인정보취급자들의 수 있음. 전성 확보 조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증적은 발견되지 않음 전간 교육 계획에 따 전성 확보 조 실태 점검 등 개인 정보보안 자체교육 계획 은 이행 증적이 누락 제26조(업무역 정보 보호 활동에 '의 붙임 '2024년 개인 되어 있어, 개인정보 런 한), 제28조의 을 수립시행하고 따라 교육 계획을 수립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 취급자에 대한 있습니까? (주요 추진 과제 단위로 성이 있으며, 이로 인 위반	정보의 안 :치) 위반 .호법】 리탁에 따 의 처리제 :(개인정보
1.2.3 구분하고 목적, 대상, 횟 해 보호 수준이 저하수, 교육방법, 교육내용 될 위험이 있음. 을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2024년에 대해서는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증적이 누락되어 있음.	준 고시】 리계획의
개인정보 침해 사실 본 센터에서는 '개인정 정보주체에게 침해 사 을 신고할 수 있는 보처리방침' 제 13조, 14 실 신고 방법을 안내 제30(개인정보 보 항법을 정보주체에 조에 침해사실을 신고할 하고 있으나, 안내된 침의 수립 및 제34(개인정보 가)? 1.3.1 1.3.1 1.3.1 1.3.1 1.3.1 1.3.1 1.3.1	변 처리방 ! 공개), 보의 유출 고) 위반 .호법 정보 처리 및 공개
개인정보 열람, 정 본 센터에서는 개인정 동의철회 및 수집 출 【개인정보 보 정·삭제, 보관리방침'의 제9조에 처 요구에 대한 처리 제4조(정보주 처리정지, 수집출처 개인정보 열람, 정정 및 절차가 누락되어 있어, 리),, 제20조 통지 등 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이외로부터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 대해 대응 가능한 처리 이 불완전할 수 있으 인정보의 수 장과 요구에 대한 절차를 수립하고 있으 며, 이로 인해 개인정 등 통지), 제 처리절차를 수립하 나, 동의철회 및 수집출 보 보호의 취약점이 정보의 열람 여 실시하고 있습니 처 요구에 대한 처리 절 발생할 위험이 있음. (개인정보의 제) 위반	호법】 체의 권 (정보주체 수집한 개 급집 출처 35조(개인), 제36조
1.4.2 정보주체의 요구에 본 센터에서는 '개인정 불복 청구 절차가 안 【개인정보 보	 호법]

	대한 조치에 불복이	보관리방침'의 제9조에	내되지 않아 정보주체	제38조(권리행사의
	있는 경우이의를 제	개인정보 열람, 정정 및	가 권리 행사에 어려	방법 및 절차) 위반
	기할 수 있도록 필	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움을 겪을 수 있으며,	
	요한 절차를 마련하	대해 대응 가능한 처리	이로 인해 개인정보	
	고 안내하고 있습니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	보호와 관련된 분쟁이	
	까?	나, 불복 청구 절차와	발생할 위험이 있음.	
		방법은 안내하고 있지		
		않음.		
	개인정보의 이용·제	본 기관에서는 인터넷	개인정보 이용 및 제	【개인정보 보호법】
	공 내역이나 이용.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정	공 내역을 정보주체에	제20조의2(개인정보
	제공 내역을확인할	보주체의 동의를 근거로	게 통지하지 않아, 정	이용·제공 내역의
	수 있는 정보시스템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	보주체가 자신의 개인	통지) 위반
	에 접속하는 방법을	체와 5만명 이상의 정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	
1.4.3	주기적으로 정보주	보주체에 대한 민감정보	고 있는지 알지 못할	【개인정보 보호법
	체에게 통지하고 있	& 고유식별정보를 처리	위험이 있으며, 이로	시행령】
	습니까?	하고 있음에도 정보주체	인해 개인정보 오남용	제15조의3(개인정보
		에게 개인정보 이용 및	및 권리 침해 가능성	이용·제공 내역의
		제공 내역을 통지하고	이 높아질 수 있음.	통지) 위반
		있지 않음		

[표 26]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대상 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4.3 대상 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2. 대상 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질의문 코드	질의문	평가근거 및 의견	개인정보 침해요인	법적 준거성
2.1.1	대상시스템에 대해 업무상 개인정보 취 급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업무수 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이 개인정보 를 처리하도록 개인 정보취급자 지정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본 센터는 '개인정보시 스템 보안 지침'의 1장 에서 조직별 개인정보보 호 취급자를 지정하고 있지만, 각 정보시스템 의 개인정보취급자를 목 록화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음.	록화하여 관리하지 않 아, 필요 이상으로 많 은 인원이 개인정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 자에 대한 감독) 위반
2.1.2	대상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역할 및 책임 부여, 개인정 보보호 교육, 개인 정보보호 서약서 작 성 등 관리·감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본 센터에서는 '개인정 보시스템 보안 지침'의 1장에 개인정보보호 취 급 구성원의 역할 및 조 치사항을 부여하고 있 음. 하지만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위임한 개 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업 무'에 대해 '개인정보 유 출 부서장'의 역할에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아닌 '신속대응팀장'이 위임한 업무에 대한 언 리만이 존재함. 또한 '5. 개인정보 파기 시 개인 정보파일의 등록사실에 대한 삭제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요청'하 는 주체가 정해지지 않 은 상태임.	가 불명확하여 관리·감 독이 부족해질 위험이 있음. 이로 인해 개인 정보 보호 조치가 미 흡해져 침해 위험이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15조(개인정보자급 자에 대한 감독), 제52 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제55조 (개인정보파일의 파 기), 제56조(개인정보 파일 등록 사실의 삭 제) 위반

	대상시스템에서 개	본 센터에서는 '개인정	개인정보파일 대장이	【개인정보 보호법】
	인정보파일을 신규	보 시스템 보안지침'의	불필요한 항목을 포함	제32조(개인정보파일
	로 보유하거나 변경	1장에서 개인정보 담당	하고 있어 관리가 비	의 등록 및 공개) 위반
	하는 경우, 개인정	자 및 취급자의 개인정	효율적으로 이루어지	
	보파일대장을 작성	보파일 관리대장 작성에	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법
	하거나 변경하도록	대한 안내가 있고, 실제	개인정보의 정확한 관	시행령】
	계획하고 있습니까?	로 개인정보파일 대장이	리와 보호가 어려워질	제33조(개인정보파일
2.2.1		현행화 되어 관리되는	위험이 있음.	의 등록사항 등) 위반
		상태임. 하지만 여행사		
		관련 업무시스템 등 실		
		업무와 동떨어지고 불필		
		요한 항목에 대한 내용		
		도 포함되어 있어, 면밀		
		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표 27]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대상 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4.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질의문 코드	질의문	평가근거 및 의견	개인정보 침해요인	법적 준거성	
3.1.3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다른 개인 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구분하여 동의를 받거나, 법령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	험 응시내역' 개인정보 파일에 해당되는 항목인 민감정보 '장애조건'을 수집하고 있지만, 민감	별도의 동의를 받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위반	
3.1.5	주민등록번호는 법 적 근거가 있는 경 우에 한하여 수집하 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서 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본 센터에서는 도로교통법 제73조에 의거하여홈페이지 회원가입 시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법적 근거가 있으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제공하고 있지 않음.	하지 않고 회원 가입 이 가능한 대안을 제 공하지 않아,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에 위 배되며, 불필요한 개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 호 처리의 제한) 위반	

3.1.9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서면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	본 센터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있는 개인정보의 항목과그 처리의 법적 근거가나타나 있지 않으며,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되어 있지않음.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한 개인정보 와 동의를 받아 처리 하는 개인정보가 구분 되지 않아,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지 못할 위험이 있으며, 이로 인해 개 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 음.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4조의 2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등) 위반
3.1.10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민감정보가 포함될 경우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리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	본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개인 정보 처리방침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지 않음.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과 비공개 선택 방법이 안내되지 않아,정보주체가 자신의 민감정보 보호에 대한선택권을 행사하지 못할 위험이 있으며,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및 권리침해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위반, 30조(개인 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위반
3.3.3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받거나, 법령 등에따라 적법하게 목적외 이용·제공하도록계획하고 있습니까?	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에 근거하여 제공하고	목적 외 이용 및 제3 자 제공에 대한 별도 의 동의 절차가 누락 되어 있어,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 적 외 이용·제공 제한) 위반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 침] 제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위반
3.3.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용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항목으로 제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	본 센터는 교통교육업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제공하고있으며, 별도의 동의서를 구비하여 동의를 받으나, 목적 외 제공에대한 내용은 누락되어있음. 따라서 최소한의	목적 외 이용 시 개인 정보 제공 항목이 최 소한으로 제한되지 않 아, 불필요한 개인정보 가 제공될 위험이 있 으며, 이는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및 개인정 보 오남용 가능성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 적 외 이용·제공 제한) 위반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 침] 제8조(개인정보의 목적

		항목으로 제한되었는지	높일 수 있음.	외 이용·제공) 위반
		확인이 불가함.		
	개인정보를 목적 외	본 센터에는 '개인정보	'개인정보 목적 외 이	[개인정보 보호법
	의 용도로 이용하거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용 및 제3자 제공 대	시행령]
	나 이를 제3자 에게	대장" 문서가 존재하지	장'이 존재하지 않아,	제15조, 18조 위반
	제공하는 경우 '개인	않음.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정보 목적 외 이용		내역이 기록·관리되지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3.3.5	및 제3자 제공 대장'		않음으로써, 개인정보	관한 고시]
3.3.3	에 기록·관리하도록		관리 투명성이 부족해	제3조(개인정보 보호업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고, 침해 사건 발생	무 관련 장부 및 문서
			시 대응이 어려워질	서식) 위반
			위험이 있음.	1개이저나 나중바치
				[개인정보 보호방침} 제59조 위반
	개인정보를 목적 외	본 센터는 교통교육업무	목적 외 이용 및 제3	제39로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의 용도로 이용하거	C 단기는 표정표기됩기 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자 제공 내역이 관보	제18조(개인정보의 이
	나 이를 제3자 에게	에 근거하여 제공하고	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용·제공 제한) 위반
	제공하는 경우 관련	있으며, 별도의 동의서	공개되지 않아, 개인정	
	내용을 관보 또는	를 구비하여 동의를 받	보 처리의 투명성이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3.3.6	인터넷 홈페이지 등	<mark>으나, 목적</mark> 외 제공에	부족해지고, 정보주체	관한 고시]
	을 통해 <mark>공개하도록</mark>	대 <mark>한</mark> 내용은 누락되어	가 자신의 개인정보	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계획하고 <mark>있</mark> 습니까?	있음. 내용 누락으로 관	이용 상황을 알지 못	개인정보의 목적 외
		<mark>련 내용은 관</mark> 보 또는 인	해 권리 침해 위험이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	높아질 수 있음.	의 공고) 위반
		해 공개되지 않음.		
	개인정보를 제3자에	도로교통혁신안전센터는	통신 구간에 암호화	[개인정보 보호법]
	게 제공하거나 연계	제3자 제공할 개인정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	제18조(개인정보의 이
	하는 경우 암호화 조치, 보유기간 지정	의 보유기간을 지정함. 그러나, 통신 구간에 암	아, 제3자에게 제공되 는 개인정보가 전송	용·제공 제한), 제19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조시, 오뉴기선 시청 등 안전성 확보를	그더다, 중선 구선에 함 호화 조치가 되어 있지	는 개한영모기 천당 중에 유출될 위험이	(개한영로를 제승된는 자의 이용·제공 제한),
	의해 필요한 조치를	오되 도시기 되어 났지 않음. 따라서 안전성 확	중에 '뉴물글 '뒤텀이'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	제29조(안전조치의무)
3.3.7	적용하도록 계획하	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	의 안전성 확보를 저	위반
	_		해하여 보호 수준이	112
	<i></i>		"'' ㅡㅡ '' ㅡ ' 낮아질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
				전성 확보조치) 위반

			,,	
	개인정보 처리에 관	본 센터의 수탁기관 4곳	수탁기관이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한 업무를 위탁 받	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처리 업무를 제3자에	제26조(업무위탁에
	아 처리하는 자가	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게 다시 위탁할 경우,	따른 개인정보의 처
	위탁 받은 개인정보	하지 않음. 다만, 이후에	위탁자의 동의를 받지	리 제한) 위반
	처리 업무를 제3자	수탁기관이 개인정보의	않으면 정보주체의 개	1 " [] 11 [
3.4.3	에게 다시 위탁하려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인정보가 무단으로 제	
	는 경우에는 위탁자	다시 위탁할 가능성이	3자에게 제공될 위험	
	의 동의를 받도록	존재함. 위탁자의 동의	이 있으며, 이는 개인	
	계획하고 있습니까?	를 받아야 한다는 문구	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를 '개인정보 관리 방침'	법적 문제가 발생할	
		에 추가해야 함.	수 있음.	
	다른 법령 등에 따	본 센터의 '개인정보관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개인정보 보호법】
	라 개인정보를 보존	리방침'제8조를 살펴보	하는 개인정보를 다른	제21조(개인정보의 파
	할 경우 해당 개인	면, 2항에 정보주체로부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기) 위반
	정보 또는 개인정보	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관리하도록 명시되어	
	파일을 다른 개인정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보와 분리하여 저장.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	분리 관리가 제대로	
	관리하도록 계획하	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3.5.2	고 있습니까?	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무단 접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및 오남용 위험이 증	
		경우, 해당 개인정보(또	가할 수 있음.	
		는 개인정보파일)을 별		
		도의 데이터베이스로 옮		
		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		
		리하여 보 <mark>존</mark> 해야 함.		
		<mark> 디아어 모든</mark> 애아 임.		

[표<mark> 28] 개인정보 침</mark>해요<mark>인 분석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mark>

(출처) 한라KPC 영향평가팀



4.4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

	4.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				
질의문 코드	질의문	평가근거 및 의견	개인정보 침해요인	법적 준거성	
4.1.3	정보주체가 비밀번 호 변경 등 중요 정 보 접근 시 비밀 번 호 재확인 등 추가 적인 인증이 적용되 도록 계획하고 있습	비밀번호 등 중요 정보 조회·변경 시 비밀번호 재확인 등의 추가 인증 절차가 적용되어 있지 않음	비밀번호와 같은 주요 정보의 조회, 변경 시 에 추가 인증이 없다 면 기밀성과 무결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본 항목은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위한 기술적 보호 방법으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 호를 위한 권장사항임	

	니까?		이 높음.	
4.1.7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비정상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기 미접속시계정 잠금, 동시 접속 제한, 관리자 로그인 알림 등 보호대책이 적용되도록계획하고 있습니까?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동시 접속 제한 기 능은 구현되어 있으나 장기 미접속시 계정 잠 금, 특수 권한 로그인 시 알림 등이 설계에 반 영되어 있지 않음		본 항목은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위한 기술적 보호 방법으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 호를 위한 권장사항임
4.1.9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의 접근권한을 부 여, 변경 또는 말소 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 간 보관하도록 계획 하고 있습니까?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의 부여부터 말 소한 내역에 대한 기록 을 최소 3년이 아닌 2 년 이상 보관하는 것으 로 확인함	미달하여 권한 남용 및 부적절한 접근에	【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기준고시】제5조(접근권한의관리)위반
4.2.7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용 모바일기기의 분실·도난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당 모바일기기에 비밀번호 설정 등의보호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업무용 모바일 기기의 분실·도난 시 비밀번호 설정과 같은 추가 보 호조치 등이 없기 때 문에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존재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6조(접근통제) 위반
4.8.1	개발 환경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테 스트 데이터 생성· 이용·파기 및 기술 적 보호조치 등에 관한 대책을 적용하 도록 계획하고 있습	터 생성·이용·파기 및 기 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는 개인정보와 같은 데이터에 대한 생성, 이용, 파기에 대한 기 술적 보호조치가 없기	안전조치 의무'를 위한 기술적 보호 방법으로
4.8.2	개인정보 유·노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 여 개인 정보 마스 킹, 웹 브라우저 우		킹 처리, 복사 붙여넣 기 등 클립보드 기능 의 제한, 키보드 해킹 방지 등의 보호대책이 없기 때문에 악의적인	본 항목은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위한 기술적 보호 방법으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 호를 위한 권장사항임

	한, 임시 파일 및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손쉽게 유	
	캐시 통제, 카드번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	출할 수 있는 환경 여	
	호 등 중요정보에		건이 마련되어 있는	
	대한 복사 화면캡	목에 대한 이행 여부를	상황임.	
	쳐 방지 및 키보드	평가하기 어려움.	001.	
	해킹 방지 등 보호			
	대책을 적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			
	개인정보취급자가	현재 문서 내에서는 개	개인정보를 전자적 환	본 항목은'개인정보 안
	개인정보를 종이로	인정보를 종이로 출력할	경이 아닌 종이와 같	전조치 의무'를 위한
	출력할 경우 출력.	경우 출력자와 출력일시	은 문서로 출력할 경	기술적 보호 방법으로
	복사물에 대하여 출	를 표시하는 등의 보호	우 출력자와 출력일시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
4.8.3	력자·출력일시 표시	대책을 적용하는 계획에	가 표시되어 있지 않	호를 위한 권장사항임
	등의 보호대책을 적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으면 추후 유출사고	(단, 2024.9.15. 이후에
	용하도록 계획하고	확인할 수 없었음. 이로	발생 시 책임추적성	는 의무사항)
	있습니까?	인해 해당 항목에 대한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수 있고 유출이 더 용	
		어려움.	이해짐.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현재 문서 내에서는 개	개인정보를 종이로 출	【개인정보의 안전성
	에서 개인정보의 출	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력할 시에는 모든 항	확보조치 기준 고시]
	력(인쇄, 화면표시,	개인정보의 출력 시 용	목에 대한 출력이 가	제12조(출력·복사 시
	파일생성 등)시 용	도를 특정하고, 출력 항	능하고 용도가 특정	안전조치) 위반
4.0.4	도를 특정하여 용도	목을 최소화하는 계획에	되어있지 않으면 해당	
4.8.4	에 따라 출력항목을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문서를 보게 되는 모	
	최소화하여 출력 <mark>하</mark>	확인할 수 없었음. 이로	든 사람들이 알아야	
	도 <mark>록</mark> 계획 <mark>하</mark> 고 있습	<mark>인해</mark> 해당 <mark>항목에</mark> 대한	하는 정보 이상으로	
	니까?	이행 여부 <mark>를</mark> 평가하기	개인정보를 얻게 되는	
		어려웠음.	위험성이 존재함.	漢

[표 29]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

4.6 특정 IT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

	1. 특정IT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					
질의문 코드	질의문	평가근거 및 의견	개인정보 침해요인	법적 준거성		
5.1.2	고정형 영상정보처 리기기 설치시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 인의 의견을 수렴하	현재 문서 내에서는 고 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		행령】 제23조(영상정 보처리기기 설치 시		

	도록 계획하고 있습 니까?	렴하는 계획에 대한 구 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음. 이로 인해 해당 항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어려 움.	지 않으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한 상태로 설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38조(사전의 견 수렴) 위반
5.1.3	고정형 영상정보처 리기기 설치 후 정 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계획하 고 있습니까?	현재 문서 내에서는 고 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후 정보주체가 쉽 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 내판을 설치하거나 홈페 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 는 계획에 대한 구체적 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 었음. 이로 인해 해당 항목에 대한 이행 여부 를 평가하기 어려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개인정보를 다루기도 하기 때문에 정보주체 가 이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 나 이에 대한 계획이 없으므로 영상정보가 수집된다는 사실을 인 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시 행령】 제24조(영상정 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39조(사전의 견 수렴) 위반
5.1.4	고정형 영상정보처 리기기 사용 시 임 의조작 및 음성 녹 음을 사용할 수 없 도록 계획하고 있습 니까?	현재 문서 내에서는 고 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사용 시 임의조작 및 음 성 녹음을 방지하는 계 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 용을 확인할 수 없었음. 이로 인해 해당 항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평가 하기 어려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 보처리기기의 설치·운 영 제한) 위반
5.3.2	원본정보의 경우 특 징정보 생성 후 지 체 없이 파기하여 복원할 수 없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로교통혁신안전센터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 보호 교육 자료 3. 안전성 확보조치에 특징정보를 생성한 후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생체인식 정보에 대한 처리방침을 따로 명시해두지 않고 있음.	절한 관리로 인한 개 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존재하고 생체인식정 보에 대한 처리에 대 한 지침이 없기 때문 에 사용자들이 정보 제공을 반대할 수 있	【생체정보 보호 가이 드라인】 생체인식정보 의 파기 위반
5.5.3	가명정보의 이용 또 는 제공하기 전에			

	재식별 위험성 등 적정성 검토를 받은 후 활용하도록 계획 하고 있습니까?		해지는 가명정보의 재 식별 위험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이 존재함.	처리 등) 위반
5.5.4	다른 ボン・マン・ス・ス・ス・ス・ス・ス・ス・ス・ス・ス・ス・ス・ス・ス・ス・ス・ス・ス	결합전문기관 또는 데이 터전문기관을 통해 가명 정보를 결합하는 절차가	가명정보 결합 시 안 전성 부족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이 존재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위반
5.5.5	가명정보 및 추가정 보를 안전하게 처리 하기 위한 내부 관 리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계획하고 있 습니까?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내 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명정보와 추가정보 의 유출이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5(가 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
5.5.6	추가정보는 별도로 저장·관리하거나 삭 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	가명정보와 추가정보를	능하므로 불필요한 추 가정보에 대한 저장을 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저장 시에는 안전한 관리방법으로 하지 않 으면 개인정보가 유출 될 가능성이 있음.	【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4(가명정보에대한 안전조치의무등),[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9조의5(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확보조치) 위반
5.6.1	업무를 목적으로 이 동형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운영 하려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	업무용으로 설치된 영 상정보처리기기를 통 해 업무자들의 개인정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2(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의운영

	경우 법에 정한 기 준에 따라 적법하게 촬영하도록 계획하 고 있습니까?	따라 적법하게 촬영할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이러한 계획은 정보주체의 권리를보호함. 그러나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명시되어 있지 않아 부분 이행이라 판단 내림.	보가 수집이 되는 경우인데 본 센터에서는이에 대한 관리방안이상세하지 않기 때문에특정인이 잘못된 접근으로 업무자들의 정보를 수집할 가능성이존재함.	제한) 위반
5.6.2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 방송 또는 그 밖에이에 준하는 수단이다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리도록계획하고 있습니까?	등을 통해 안내를 철저 히 이행할 계획을 수립 하고 있음. 하지만 안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불빛, 소리 등과 같은 방법 이 명시되지 않으면 잘못된 방식으로 개인 정보를 획득하고 처리 했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제한), 시행 ば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시행 정보자리기기의 환영 성정보차리기기 환영 사실 표시 등) 위반 사실 표시 등) 위반
5.6.3	영상정보 촬영 시 이동형 영상정보처 리기기에 대한 운영· 관리방침을 수립하 도록 계획하고 있습 니까?	설치와 운영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운영을 할 때 명확한 규정 절차가 존재하지 않고 운영을 하면 적법하게 촬영을 하고 개인정보를 수집 한다는 계획에 어긋남.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2(이동형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위반

[표 30]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특정 IT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

5 위험평가

5.1 위험평가 개요

1) 위험평가 목적

● 영향평가 결과에서 도출된 침해위험을 기준으로 위험평가를 수행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효과적인 보호대책수립을 목적으로 함

2) 위험도의 활용

● 영향평가 결과에서 도출된 침해요인들은 개선하여야 하며, 개선사항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데 위험도 산정을 활용할 수 있음

3) 위험도 산정공식

● 영<mark>향평가 수행안내서에서는</mark> 개<mark>인</mark>정보 침해위험 요소의 위험도 산정공식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으므로,본 사업에서는 이 공식을 적용함

위험도 = 자산가치(영향도) + (침해요인 발생가능성 x 법적 준거성) x 2

● 개인정보 취급이 발생하는 업무와 해당 업무를 통해 취급되는 개인정보의 현황과 각 개인정보 항목의 조합수준에 따른 영향도를 [붙임 4]와 같이 구분하여 평가함

● 개인정보 영향도(자산가치)는 다음의 표와 같이 구분하여 평가함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도 영향도 등급표 문서 참고

등급	설명	자산가치
	그 자체로 개인 식별이 가능하거나 민감한 개인정보	
1등급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엄격히 제한된 개인정보	5
	유출 시 민/형사상 법적 책임 부여 가능 및 대외 신임도 크게 저하	
257	조합되면 명확히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	2
2등급	유출 시 민/형사상 법적 책임 부여 가능 및 대외 신인도 저하	3
1 □ □	개인정보와 결합하여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간접 개인정보	1
3등급	제한적인 분야에서 불법적인 이용이 가능한 정보	1 1

[표 31] 개인정보 영향도(자산가치)

(출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24.04)

● 개인정보 침해요인 발생가능성은 다음의 표와 같이 구분하여 평가함

구분	발생 가능 정도				
매우 높음	해당 즉각적인 침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있는 경우	3			
높음	해당 침해요인의 발생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2			
중간	해당 침해요인 <mark>의</mark> 발 <mark>생</mark>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			
낮음	해당 침해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0			

[표 32] 개<mark>인</mark>정보 침해요인 발생 가능성

(출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24.04)

● 법적 준거성은 다음의 표와 같이 구분하여 평가함

구분	법적 준거성	중요도
높음	법적 준수 사항	1.5
낮음	법률 외 요건 (권장사항)	1

[표 33] 법적 준거성 가중치

(출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24.04)

5.2 위험도 산정 결과

1)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자산명	개인정보 관리정책	이허드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	위험도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1.1.1	8	5	1	1.5	
침해요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경력	부족으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	
	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정	해 개인정보 침혀	내 및 유출 위험	이 증가할 수 있	(음.	
자산명	개인정보 관리정책	위험도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	1104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1.1.2	8	5	1	1.5	
침해요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이 법령에 맞게	수행되지 않아	책임의 불명확형	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 !	보호 관리가 소홀	를해져 침해 위험	성이 증가할 수 9	있음.	
자산명	개인정보 관리정책	위험도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	.,,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1.2.1	8	5	1	1.5	
침해요인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보				h의 적격성 검	
	증이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	개인정보 보호 관	<u></u> 리가 미흡해질	위험이 있음.		
자산명	개인정보 관리정책	위험도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	110-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1.2.1	8	5	1	1.5	
침해요인				보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		
	지 않을 위험이 있으며, 이로	인해 침해 가능				
자산명	개인정보 관리정책	위험도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1.2.3	6	5	1	1.5	
침해요인	연간 교육 계획에 따른 이행				실제로 이루어	
	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보호				
자산명	홈페이지 시스템	위험도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1.3.1	11	5	3	1	
침해요인	정보주체에게 침해 사실 신고					
	어려울 경우, 실제 침해 발생	시 석설한 대응				
자산명	홈페이지 시스템	위험도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1.4.1	11	5	2	1.5	
침해요인	동의철회 및 수집 출처 요구					
	불완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					

자산명	홈페이지 시스템	이하드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	위험도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1.4.2	11	5	2	1.5
침해요인	불복 청구 절차가 안내되지 (않아 정보주체가	권리 행사에 아	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		
자산명	홈페이지 시스템	위험도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	귀암포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1.4.3	14	5	3	1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내역	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지 않아,	정보주체가 자	신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지 못할 위험(이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	오남용 및 권
	리 침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표 34] 위험도 산정 결과 -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2) 대상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자산명	개인정보 관리정책	이허트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	위험도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2.1.1	7	5	2	1	
침해요인	개인정보취급자를 목록화하여	관리하지 않아,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인원이 개	인정보에 접근	
	할 <mark>가</mark> 능성이 있으며, 이로 <mark>인</mark>	해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위험	험이 증가할 수	있음.	
자산명	개인정보 관리정 <mark>책</mark>	위험도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	귀심포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2.1.2	10	3	2	1 漢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역할	및 책임 부여기	명확하지 않고	, 일부 절차의 ?	백임 주체 <mark>가 불</mark>	
침해요인	명확하여 관리·감독이 부족해질 위험이 있음. 이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미흡해져					
	침해 위험이 증가할 수 있음.					
자산명	개인정보 관리정책	이하드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	위험도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2.2.1	5	3	1	1	
침해요인	개인정보파일 대장이 불필요현	한 항목을 포함히	고 있어 관리기	-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금세표한	으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의	정확한 관리와 노	L호가 어려워질	위험이 있음.		

[표 35] 위험도 산정 결과 - 대상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3) 개인정보처리단계별 보호조치

자산명	홈페이지 시스템	위험도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수집단계	취임도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3.1.3	14	5	3	1.5
침해요인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아,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				
	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어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				
자산명	홈페이지 시스템	위험도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수집단계	1164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3.1.5	6	3	1	1.5
침해요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고 회원 가입이	가능한 대안을	제공하지 않아,	개인정보 최소
B - 11 - 12 - 12	수집 원칙에 위배되며,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해 보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음				할 수 있음.
자산명	홈페이지 시스템	위험도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수집단계	1104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3.1.9	9	3	2	1.5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 :	가능한 개인정보	와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	정보가 구분되
침해요인	지 않아,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지 못할 위험이 있				
	으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음.				
자산명	홈페이지 시스템	위험도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수집단계	., .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3.1.10	9	3	2	1.5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과 비공개 선택 방법이 안내되지 않아, 정보주체가 자신의 민감정				
침해요인	보 보호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하지 못할 위험이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및 권				
	리 침해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음.				
자산명	홈페이지 시스템 및		개인정보	발생	법적
	개인정보 관리정책	위험도	영향도	가능성	_ · 준거성
처리단계	제공단계			, , ,	
질의문 코드	3.3.3	9	3	2	1.5
침해요인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며, 이	는 개인정보 보호	호법 위반으로 법 I	d적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
자산명	홈페이지 시스템 및		개인정보	발생	법적
	개인정보 관리정책	위험도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처리단계	제공단계		- 55-	100	_ 10
질의문 코드	3.3.4	12	3	3	1.5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내역				
침해요인	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		이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	오남용 및 권
	리 침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자산명	홈페이지 시스템 및		개인정보	발생	법적
120	개인정보 관리정책	위험도	영향도	가능성	급 · 준거성
처리단계	제공단계		002	100	E 10
질의문 코드	3.3.5	3.3.5 13 5		3	1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	데3자 제공 대장	'이 존재하지 않	아, 목적 외 이	용 및 제공 내
침해요인	역이 기록·관리되지 않음으로	써, 개인정보 관	리 투명성이 부	·족해지고, 침해	사건 발생 시
	대응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음				
자산명	홈페이지 시스템	위험도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제공단계	110-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3.3.6	8	5	2	1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내역이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	지에 공개되지 '	않아, 개인정보
침해요인	처리의 투명성이 부족해지고,	정보주체가 자	신의 개인정보	이용 상황을 일	!지 못해 권리
	침해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				
자산명	홈페이지 시스템	위험도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제공단계	110-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3.3.7	11	5	3	1
	통신 구간에 암호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 제3자에게 제	공되는 개인정보	보가 전송 중에
침해요인	유출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있음.	개인정보의 안전	선성 확보를 저히	배하여 보호 수준	들이 낮아질 수
자산명	홈페이지 시스템	01+1-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제공단계	위험도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3.4.3	11	5	2	1.5
	수탁 <mark>기관이 개인정보 처리 업</mark>	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경	경우, 위탁자의 등	등의를 받지 않
침해요인	으면 <mark>정보</mark> 주체의 개인 <mark>정보</mark> 가	무단으로 제3자	l에게 제공될 위	위험이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 <mark>법</mark> 위반 <mark>으로 법적</mark>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ī		AR
자산명	홈페이 <mark>지 시스템</mark>	위험도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파기단계	귀참포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3.5.2	14	5	3	1.5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개인정보를 다른	를 개인정보와 분	분리하여 관리하	도록 명시되어
침해요인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분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를 경우, 개인정보	보의 무단 접근
	및 오남용 위험이 증가할 수	있음.			

[표 36] 위험도 산정 결과 - 개인정보처리단계별 보호조치

4) 대상시스템 기술적 보호조치

자산명	홈페이지 시스템	이치트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	위험도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4.1.3	11	5	3	1
침해요인	비밀번호와 같은 주요 정보의 장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없다면 기밀성고	마 무결성이 보 기
 자산명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112 11001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	위험도	영향도	가능성	근 · 준거성
질의문 코드	4.1.7	11	5	3	1
침해요인	관리자 계정과 같은 특수권한 의 무단 접근 및 유출 위험성		적인 접근 방지	대책의 부재로	인해 개인정보
자산명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이하ㄷ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	위험도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4.1.9	9	3	3	1
침해요인	접근권한 기록 보관 기간이 분 적이 어려움.	법적 기준에 미딜	한 권한 남용	· 및 부적절한 7	접근에 대한 추
자산명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위험도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	T II T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4.2.7	9	5	2	1
침해요인	업무용 모바일 기기의 분실·도 에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전		설정과 같은 2	추가 보호조치 등	등이 없기 때문
자산명	개 <mark>인정보 처리시스</mark> 템	이성ㄷ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	위험도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4.8.1	11	5	3	1
침해요인	개발 환경에 <mark>서 다뤄지는 개인</mark> 보호조치가 없기 때문에 개발				에 대한 기술적
자산명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위험도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	THE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4.8.2	11	5	3	1
침해요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다루는 제한, 키보드 해킹 방지 등의 정보를 손쉽게 유출할 수 있는	보호대책이 없기	기 때문에 악의적	적인 사용자가 집	
자산명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위험도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	귀임도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4.8.3	9	3	3	1
침해요인	개인정보를 전자적 환경이 아 시되어 있지 않으면 추후 유를 출이 더 용이해짐.				

자산명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위험도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	귀임포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4.8.4	9	3	3	1
	개인정보를 종이로 출력할 시	에는 모든 항목(에 대한 출력이	가능하고 용도	가 특정 되어있
침해요인	지 않으면 해당 문서를 보게	되는 모든 사람	들이 알아야 하	는 정보 이상으	로 개인정보를
	얻게 되는 위험성이 존재함				

[표 37] 위험도 산정 결과 - 대상시스템 기술적 보호조치

5) 특정 기준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

자산명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이치ㄷ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	위험도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5.1.2	7	5	1	1
침해요인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설치함으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				
금에표단	가능성이 있음.	시에는 피스에서	UU02 41	-현 중네포 글^	기 시시 (6년
자산명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위험도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	ПВТ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5.1.3	9	5	3	1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개인정보				
침해요인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이에 대		므로 영상정보기	수집된다는 사	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	이 있음.			
자산명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위험도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	1,6—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5.1.4	11	5	2	1.5
	해당 영상에 대한 임의조작이				
침해요인	│ 처리가 과해지는 것이기에 수 │ │ 칙에도 벗어남.	:집해야 할 정보	를 이상으로 얻	을 수 있고 정5	보의 무결성 원
자산명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	위험도	영향도	가능성	급 ⁻ 준거성
질의문 코드	5.3.2	11	5	2	1.5
			_		
침해요인	대한 처리에 대한 지침이 없기				
자산명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위험도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	귀참포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5.5.3	9	5	2	1
침해요인	가명정보가 시간이 지난 후에	식별이 가능해	지는 가명정보의	기 재식별 위험으	으로 인한 개인
B-11-2-C	정보 침해 가능성이 존재함.				

자산명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이치트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	위험도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5.5.4	7	5	1	1
침해요인	가명정보 결합 시 안전성 부족	족으로 인한 개인	정보 침해 가능	성이 존재함.	
자산명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이치ㄷ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	위험도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5.5.5	8	5	1	1.5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에 대해	결합으로 인한 :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	도록 분리 보관
침해요인	과 접근 통제가 이루어지지 수 있음.	않아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의 유	출이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자산명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이치트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	위험도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5.5.6	8	5	1	1.5
	추가정보는 가명정보와 결합	하여 특정인의 7	ㅐ인정보로 유추	가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추가
침해요인	정보에 대한 저장을 하지 않!		장 시에는 안전	한 관리방법으로	로 하지 않으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음. 			
자산명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위험도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5.6.1	7	5	1	1
침해요인	│ 업무용으로 설치된 영상정보: │ 데 본 센터에서는 이에 대한				
검에표단	네 본 센터에서는 이에 대한 업무자들의 정보를 수집할 <mark>가</mark>		1약시 ᆭ기 때군	에 국정한에 될	大신 합문으로
자산명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위험도	영향도	가능성	_ · 준거성
질의문 코드	5.6.2	9	5	2	1 漢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고	! 있다는 것을 !	나타내기 위한 ·	불빛, 소리 등고	· 같은 방법이
침해요인	명시되지 않으면 잘못된 방식	ļ으로 개인정보 를	를 획득하고 처리	비했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
	음.	ı			
자산명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위험도	개인정보	발생	법적
처리단계	-	110-	영향도	가능성	준거성
질의문 코드	5.6.3	7	5	1	1
침해요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적법하게 촬영을 하고 개인정				고 운영을 하면
	[표 201 이청도 사저 경				

[표 38] 위험도 산정 결과 - 특정 기준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

5.3 개선방안 도출

●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을 도출하고, 해당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대상기관 개인정 보보호 관리체계 관련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도출함

위험도	자산명	질의문 코드	침해요인	개선방안
8	개인정보 관리정책	1.1.1 1.1.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경력 부족으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이 법령에 맞게 수행되지 않아 책임의 불명확함이 발생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한 전문 교육과정 도입을 하고, 내부 직원 중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대한 경력을 4년 이상 가진 사람을 추가로 지정하여 상시 대응 체계 강화
11	홈페이지 시스템	1.3.1	정보주체에게 침해 사실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나, 안내된 절차가 복잡하거나 접근이 어려울 경우, 실제 침해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지연되어 피해가 확대될 위험이 있음.	정보주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간단한 신고 절차 마련 및 24시간 응대 가능한 고객센터 혹은 AI 챗봇 서비스 도입
11	개인정 <mark>보</mark> 처리방침	1.4.1 1.4.2	동의철회 및 수집 출처 요구에 대한 처리 절차가 누락되어 있어,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이 불완전할 수 있으며, 불복 청구 절차가 안내되지 않아 정보주체가 권리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	명확한 동의 철회 및 수집 출처 요구 절차 마련, 불복 청구 절차를 안내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방법에 대한 안내를 강화
14	개인정보 처리방침	1.4.3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내역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지 않아,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지 못할 위험이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 오남용 및 권리 침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내역에 대한 주기적인 통지 시스템 마련 및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수립
5	개인정보 관리정책	2.2.1	여행사 관련 업무시스템 등 실 업무와 동떨어지고 불필요한 항목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등 개인정보파일 대장이 불필요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파일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항목을 정기적으로 점검 및 삭제하는 시스템 도입

14	홈페이지 시스템	3.1.3	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의 정확한 관리와 보호가 어려워질 위험이 있음. '장애정보'와 같은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지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별도의 동의 절차를 마련
			않아,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어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	
9	홈페이지 시스템	3.1.9 3.1.10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한 개인정보와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구분되지 않아,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방식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지 못할 위험이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고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과 비공개 선택 방법이 안내되지 않아, 정보주체가 자신의 민감정보 보호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하지 못할 위험이 있으며, 이로인해 개인정보 유출 및 권리 침해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음.	정보주체의 동의 유무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명확한 동의 구분 및 민감정보 공개와 관련한 선택권 보장 절차 도입
12	홈페이지 시스템 및 개인정보 관리정책	3.3.3 3.3.4 3.3.5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의 동의 절차가 누락되어 있고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이 존재하지 않아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내역이기록·관리되지 않고 있어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며 목적 외 이용 시 개인정보 제공 항목이 최소한으로 제한되지 않아,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제공될 위험이 있음.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시 명확한 동의 절차를 마련하고,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제공하도록 개선
11	홈페이지 시스템	4.1.3	비밀번호와 같은 주요 정보의 조회, 변경 시에 추가 인증이 없다면 기밀성과 무결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음.	비밀번호 등 주요 정보 조회 및 변경 시 이중 인증을 적용하여 기밀성과 무결성을 강화
11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4.1.7	특수 권한 로그인 시 알림 등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관리자 계정과 같은 특수권한에	특수 권한 로그인을 포함한 중요 접근 시 알림 기능을 추가하고 비정상적인 접근에 대한 실시간

			=======================================	
			대한 비정상적인 접근 방지	모니터링 및 대처 방안을 마련
			대책의 부재로 인해 개인정보의	
			무단 접근 및 유출 위험성	
			존재함.	
9	개인정보	4.1.9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의	접근권한 내역 기록 보관 기간을
	처리시스템		부여부터 말소한 내역에 대한	법적 기준인 최소 3년 이상으로
			기록을 최소 3년이 아닌 2년	확대하여 권한 남용 및 부적절한
			이상 보관하는 것으로 확인하여	접근에 대한 추적 가능성 확보
			 접근권한 기록 보관 기간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여 권한 남용 및	
			····································	
			^ ^ EC BC # #C	
11	개인정보	4.8.1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다루는	개인정보 처리 화면에서 마스킹
	처리시스템	4.8.2	"''' '' '' '' '' '' '' '' '' '' '' '' '	"'-''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111-6		붙여넣기 등 클립보드 기능의	해킹 방지 등의 보안 대책을
			제한, 키보드 해킹 방지 등의	마련하여 정보 유출 방지
			세년, 어모드 해당 당시 당의 보호대책이 없기 때문에 악의적인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소오레직이 없기 때문에 먹되먹는 사용자가 접근 시에 개인정보를	
			사용시기 답는 사에 개단용포를 손쉽게 유출할 수 있는 환경	
	레이커니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임.	
9	개인정보	4.8.3	개인정보를 전자적 환경이 아닌	개인정보 출력물에 출력자와
	처리시스템	4.8.4	종이와 같은 문서로 출력할 경우	출력일시를 자동으로 표시하여
			출력자와 출력일시가 표시되어	유출사고 발생 시 책임추적성을
			있지 않으면 추후 유출사고 발생	확보하고 유출을 방지
			<mark>시</mark> 책임 <mark>추</mark> 적성 관련해서 문제가	
			<mark>생</mark> 길 수 있고 유출이 더	
			용이해 <mark>짐</mark> .	
8	개인정보	5.5.5	추 <mark>가정</mark> 보는 가명정보와 결합하여	불필요한 추가정보 저장을
	처리시스템	5.5.6	특정인의 개인정보로 유추가	최소화하고, 저장 시에는 강 <mark>력</mark> 한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추가정보에	암호화와 접근 제한 등의 안전한
			대한 저장을 하지 않도록	관리 방법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설계하고 저장 시에는 안전한	유출 방지
			관리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음.	
<u> </u>		l	····= ·	<u> </u>

[표 39] 개선방안 표

5.4 개선계획 수립

● 영향평가 결과 개인정보 침해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개선과제 이행이 필요하며,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과제의 수행시기를 제시함

● 개선계획 수립표는 아래와 같다.

순번	개선과제	개선내용	담당부서	이행 구분	수행 시기	과제성격
1	민감정보 처리 절차 개선	'장애정보'와 같은 민감정보 처리에 대해 별도의 동의 절차를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	ICT 운영처 정보보호처	필수	2024년 9월	정책 개정 및 시스템 수정
2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절차의 투명성 확보	개인정보의 목적 외이용 및 제3자 제공 시명확한 동의 절차를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제공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불필요한 정보 제공을 방지	ICT 운영처 정보보호처	필수	2024년 9월	정책 개정 및 시스템 수정
3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내역의 투명성 강화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내역에 대해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러한 통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운영의 일관성을 보장	ICT 운영처 정보보호처	필수	2024년 11월	시스템 및 개인정 <mark>보</mark> 처리방침 수정
4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관리자와 같은 특수 권한 로그인 시 알림 기능 추가	특수 권한 로그인을 포함한 중요 접근 시 알림 기능을 추가하고 비정상적인 접근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대처 방안을 마련	정보보호처	권장	2024년 12월	시스템 수정
5	개인정보 처리 화면 보호대책 강화	개인정보 처리 화면에서 마스킹 처리, 클립보드 기능 제한, 키보드 해킹 방지 등의	ICT 운영처	권장	2024년 11월	시스템 수정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				
		조년 테크를 하신하여 정보 유출 방지				
6	웹 사이트 비밀번호 조회 및 변경 시 추가 인증 도입	웹 사이트 상에서 사용자가비밀번호 등 주요 정보를 조회하거나 변경을 시도할 시 이중 인증을 적용하여 기밀성과 무결성을 강화	ICT 운영처	권장	2024년 9월	시스템 수정
7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절차 개선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및 수집 출처 요구에 대한 명확한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불복 청구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여, 정보주체가 권리 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기획조정처 정보보호처	필수	2024년 9월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정
8	개인정보 침해 신고 절차의 접근성 향상	정보주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간단한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침해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응대 가능한 고객센터 혹은 AI 챗봇 서비스를 도입	기획조정처 ICT운영처	필수	2024년 11월	시스템 수정
9	개인정보 출력물에 출력자 정보 추가	개인정보 출력물에 출력자와 출력일시를 자동으로 표시하여 유출사고 발생 시 책임추적성을 확보하고 유출을 방지	ICT 운영처	필수	2024년 9월	정책 개정 및 시스템 수정
10	개인정보 처리 방식의 명확한 구분	정보주체의 동의 유무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감정보 공개와 관련된 선택권 보장 절차를 도입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	ICT 운영처 정보보호처	필수	2024년 9월	정책 개정 및 시스템 수정

1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내역 기록 보관 기간 연장	접근권한 내역 기록 보관 기간을 법적 기준인 최소 3년 이상으로 확대하여 권한 남용 및 부적절한 접근에 대한 추적	정보보호처	필수	2024년 10월	정책 개정 및 시스템 수정
		가능성 확보				
12	가명정보와 개인추가정보 저장 관리 방법 개선	불필요한 추가정보 저장을 최소화하고, 저장 시에는 강력한 암호화와 접근 제한 등의 안전한 관리 방법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	정보보호처	필수	2024년 9월	정책 개정 및 시스템 수정
1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경력 부족 보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한 전문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법적 요구사항과 최신 개인정보 보호 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내부 직원 중 개인정보 보호 업무 경력을 4년 이상 보유한 인력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여, 상시적인 대응체계를 강화	인사처 정보보호처	필수	2024년 9월	교육 및 인 력 강화
14	개인정보 파일 관리체계의 효율성 제고	개인정보 파일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불필요한 항목을 정기적으로 점검 및 삭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정확한 관리와 보호를 강화	정보보호처	필수	2024년 9월	정책 개정

[표 40] 개선계획 수립표

● 상세한 개선계획 이행방안은 아래 표와 같다.

개선 과제명		민감정보 처리 절차 개선	순번	1
관련 평가항목		3.1.3	법적요건	필수 사항
과제내용	보호를 강 정보주체, 대한 기록 시행하여,	등 민감정보 처리에 대해 별도의 동의 화한다. 민감정보 수집 및 처리 시 추천가 처리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 을 철저히 관리한다. 민감정보 처리에 민감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민감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민감정보의유 1. 사상・신념(이테올로기, 사상적 경향, 종교적 신념 등) 2.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반드시 적법한 노동조합이거나 정 3. 정치적 견해(정치적 사안에 대한 입장, 특정 정당의지지 여부에 상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병력(病歷), 신체적·정신적 장애, 성 5.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 -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 및 선고 유예, 보호감호, 치료감정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정,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 -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 한 정보 -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가적인 보안 조록 동의서를 자대한 내부 직접 함당일 필요는 없음) 관한 정보등) 참적취향등, 혈액형은 제외보	조치를 도입하고, 테공하며, 동의 여부에 원 교육을 정기적으로 의 일호, 집행유예의 취소, 벌금
담당부서		ICT 운영처, <mark>정</mark> 보보호처	수행시기	2024년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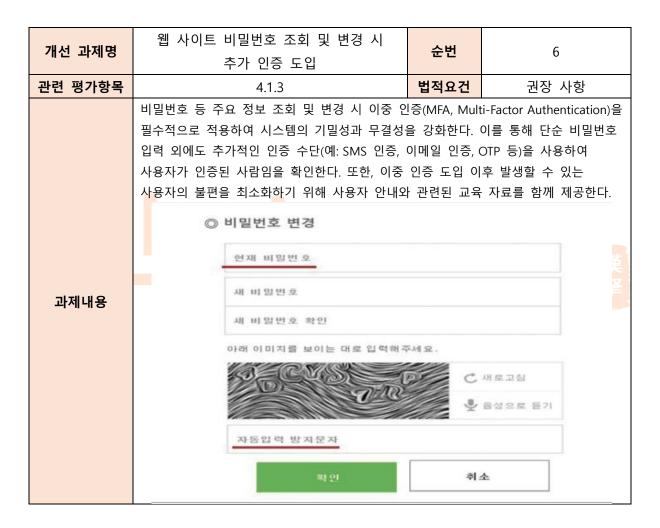
							400
개선 과제명	목적 외 이용 및	l 제3자 제	공 절차의	순번	ш	2	手
개선 파제경	투명	성 확보		ᇤ	-	2	
관련 평가항목	3.3.3,	3.3.4, 3.3.5		법적외	요건	필수 사형	이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	3자 제공 시	명확한 동으	절차를	마련하여,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한다. 최소	노한의 개인	정보만 제공하	F도록 절차	를 개선히	하여 불필요한 정	정보
	제공을 방지하며, 이를 위한 사전 점검 시스템을 도입한다.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기록을 철저히 관리히	l고, 필요시	이를 정보주	체에게 공기	배할 수 있	있도록 한다.	
			개인정보 목적 외 0	이용.제공 대장			
과제내용	14분기판	제공일자 제공주기 제공항반	개공목학	부종근거	3.454 3.454	W2	
	시스템	2013년 2013년 마음 다음을 시스템 으로 온라인 연계함	XXXX 목적으로 00000부로 송신함	000별 5조	이름, 주소, 교육일자, 교육비	214 :490255	
	사스템 .	2013년 - DR를 시스템 5월 4일 대월 - 연계합	2000X 목적으로 200020부분 용신함	000법 5조	이름, 주소, 교육원자, 교육비	₹9 40293	
담당부서	 ICT 운영?	처, 정보보호	 ^도 처	수행시	171	 2024년 9월	월

개선 과제명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내역의	순번	3	
게인 과제경	투명성 강화	단	5	
관련 평가항목	1.4.3	법적요건	필수 사항	
과제내용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내역을 정보주체에게 주고구축한다. 이와 관련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수름일관되게 유지되도록 한다. 정보주체는 자신에게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개인정보이용·제공내역 보다	입하여, 정보 지 제공된 내역· 를 마련한다.	네공 방식과 내용이	
	1.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담당부서	ICT 운영처, 정보보호처 수행시기 2024년 11월			

개선 과제명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관리자와 같은 특수 권한 로그인 시 알림 기능 추가	순번	4
관련 평가항목	4.1.7	법적요건	권장 사항
과제내용	특수 권한 계정으로 로그인할 때마다 관리자가 등 구축한다. 알림은 이메일, SMS, 실시간 알림 등으시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를 발생시키고, 해당 로기록하여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알림 기계정 잠금 및 관리자에게 보고되는 기능도 함께	방식으로 제 그인을 실시간 등과 함께 비정 구현한다.	공되며, 비정상적인 접근 보 모니터링 시스템에
담당부서	정보보호처	수행시기	2024년 12월

개선 과제명	개인정보 처리 화면 보호대책 강화	순번	5
관련 평가항목	4.8.1, 4.8.2	법적요건	권장 사항
과제내용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화면에서 마스킹 처리, 클럽의 보호대책을 강화한다. 이 조치들은 악의적인 없도록 시스템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전면허번호 등의 주요 정보는 부분적으로만 표시여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가상 키보드 입력 방식을 도입하여 악성코드로부	사용자가 개인 어, 화면에 표 되며, 복사 및 또한, 키보드	· 전보를 쉽게 유출할 수 시되는 주민등록번호, 운 · 붙여넣기 기능을 제한하 ·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7	개인정보 표시제한 보호조치가 적용된 개인정보 조회 화면(예시)				
		성명	홍 * 동	생년월일	****년 *월 *일	į
		전화번호	02-***-1234	핸드폰	010-***-123	34
		주소	서울 종로구 ***동 12-3	접속지 IP	123,123,***,12	23
		공개설정 등록설정	○ 전체공개 ○ 회원공개 ○ 스크랩허용 ○ 복사허	_	검색허용 ?	
담당부서		IC	Γ 운영처	수형	행시기	2024년 11



	▮ 비밀번호찾기			홉 > 회원정보 > 비밀번호찾기
	비밀번호를 발급받으	실 수 있습니다. 그인 후 [회원정보관리]메뉴에서	일번호 힌트 또는 이메일과 휴대 대로운 비밀 번호로 변경하시기 (IpDesk(15)로 문의해 주.	바랍니다.
	개인(내국인) 개인(외국	인) 개인(재외국민) 아이턴	인(FPN) 법인사업자(내국인)	법인사업자(외국인)
	개인 (내국인)	아이디 [
	등록하신 휴대폰 기업서 등록한 휴대전화(SMG)로	등록하신 이메일 개입시 등록한 이메일주소로	등록하신 힌트 가입시 등록한 비일번호힌트로	i-PIN 아이핀 인증
	임시비밀번호 받기	임시비밀번호 받기	임시비밀번호 받기	임시비밀번호 받기
담당부서	ICT 운영	3저	수행시기	2024년 9월

개선 과제명	정	보주체의 권리보장 절차 개선	순번	7
관련 평가항목		1.4.1, 1.4.2	법적요건	필수 사항
과제내용	처리 절 상세히 철회 및	II의 동의 철회 요청이나 개인정보 수집 차를 마련한다. 정보주체가 권리 행사에 안내하며, 이를 위한 안내서를 제작하여 수집 출처 요구에 대한 처리는 요청일로 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열람제한·거절사유(법)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교 3. 공공기관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때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 따라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어려움이 없도 제공하거나 온로부터 7일 이나 제공한다. 제35조제4항) - 그밖의 이익을 부당하 중대한지장을 초래하는 교육법」에 따른 평생교 하에 관한 업무 관한 업무	로록 불복 청구 절차를 라인 포털에 게시한다. 배에 완료되도록 하며, 레침해할우려가있는경우 경우 육시설,그밖의 다른 법률에
담당부서		기획조정처, 정보보호처	수행시기	2024년 9월

개선 과제명	개인정보 침해 신고 절차의 접근성 향상	순번	8
관련 평가항목	1.3.1	법적요건	필수 사항
과제내용	정보주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간편한 신고 절 웹 기반의 신고 양식을 개발하여 사용자 접근성: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응대 가능한 고	을 높인다. 개역	인정보 침해 발생 시

	서비스를 도입하여 실시간 상담을 지원한다. 모든	든 신고는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체계화된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하며, 처리 결과를	를 신속히 통지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	72 (www.kopico	.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	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				
담당부서	기획조정처, ICT운영처	수행시기	2024년 11월		

개선 과제명	개인정보 출력물에 출력자 정보 추가	순번	9
관련 평가항목	4.8.3, 4.8.4	법적요건	필수 사항
과제내용	4.8.3, 4.8.4 개인정보를 출력할 때 출력자와 출력 일시를 자연구축하여, 유출 사고 발생 시 책임 추적성을 확별보게나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만약 유출 사고 책임자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교출력 기록을 시스템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취소를 위해하고 있게 조절 연구 경제 위치 조절 연구 경제 정보자동 대체 연구 경제 전보 자동 대체 연구 경제 전보 가동 대체 연구 기관	동으로 인쇄물 보한다. 이를 통 가 발생하더리 바정에서 출력	에 표시하는 시스템을 통해 출력물의 불법 나도 출력된 정보의 물 관리 절차를 강화하고,
담당부서	ICT 운영처	수행시기	2024년 9월

개선 과제명	개인정보 처리 방식의 명확한 구분	순번	10	
관련 평가항목	3.1.9, 3.1.10	법적요건	필수 사항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과제내용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감정보			
과세네 <u>ㅎ</u>	를 강화하고, 선택사항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제공하여 정보주체의 이해를 돕는다.			
담당부서	ICT 운영처, 정보보호처 수행시기 2024년		2024년 9월	

개선 과제명	개인정보기	처리시스템어	∥ 대한	_	÷번		11	
개인 되세 6	접근권한 내역	기록 보관	기간 연장	ī			11	
관련 평가항목		4.1.9 법적요건 필수 사항 !정보보호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 5조에 따라 접근권한 내역을 최소 3 ¹					필수 사항	
과제내용	[개인정보보호의 안보관하도록 시스템:이를 연장하여 권한기록이 안전하게 자관리의 투명성을 높으 접근권한 대상자 ID excelkim jamesbond superman batman	을 개선한다. 난 남용이나 부 付장될 수 있도 한이기 위해 정	기존에는 접 부적절한 접근 E록 암호화 5	근권한 내 에 대한 및 접근 저	역이 2년 추적이 2 한을 3 모니터 2 총을 55 원	년 동안 <u>!</u> 가능하도 :화한다.	보관되었으나, 록 하며, 보곤 또한, 기록	,
담당부서		벙보보호처		수형	생시기	2	024년 10월	

개선 과제명	가명정보와 개인추가정보	순번 12					
	저장 관리 방법 개선		12				
관련 평가항목	5.5.5, <mark>5.</mark> 5.6	법적요건	필수 사항				
과제내용	추가정보와 가명정보는 <mark>분</mark> 리하여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물리적인 <mark>분리가 어려운</mark> 경우 DB 테이블 분리 등 논리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또한 불필요한 추가정보의 저장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저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저장된 추가정보는 강력한 암호화 기법을 사용하여 보호하며,						
담당부서	정보보호처	수행시기	2024년 9월				

개선 과제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경력 부족 보완	순번	13		
관련 평가항목	1.1.1, 1.1.2	법적요건	필수 사항		
과제내용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과 보호 방법론을 포함한 전문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또한 내부 직원 중				
	개인정보 보호 업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인력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여,				
	상시적인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해당 교육 과정은 분기별로 진행하며, 교육 수료자에				

	대한	대한 평가 및 피드백 과정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자격 요건			
		공공기관		자격요건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		
		2	① 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3급 이상 공무원	개인정보보호 경력, 정보보호	
		3	①, ② 외의 고위3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4급 이상 공무원	경력, 정보기술 경력을 합하여 총 4년 이상 보유하고, 그 중 개인	
		4	①~③ 외의 국가기관	개인정보처리업무담당 부서장	→ 정보보호 경력을 최소 2년 이상 ■ 보유	
		5	시ㆍ도 및 시ㆍ도 교육청	3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6	시 · 군 및 자치구	4급 이상 공무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	
		7	각급 학교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자 ※ 직전 연도 12월 31일 기준, 재학생수 (대학원 재학생 수 포함)가 2만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 교직원	1 - 입고 '고등파육입고 그 밖의 나는 1	
		8	①~⑦ 외의 공공기관	개인정보처리업무담당 부서장		
담당부서			인사처, 정보보호기	수행시기	2024년 9월	

개선 과제명	개인정보 파일 괸	·리체계의	순번	14	
관련 평가항목	2.2.1			법적요건	필수 사항
과제내용	개인정보 파일 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체계에 대한 내부 감항목은 매년 1회 이상 태분원보패함 영구분에 보유급제(관련함함) 연결하다 (대한 대부 감 기록분에 보유급제(관련함함) 연결하다 (대한 기록분에 보유급제(관련함함) 연결하다 (대한 기록분에 보유급제(관련함함) 연결하다 (대한 기록분에 보유로제(관련함함) 연결하다 (대한 기록분에 보유로제(대한 기록부터 보유로제(대한 기록분에 보유로제(대한 기록부터 보유로제(대한 기로)보유로제(대한 기록부터 보유로제(대한 기로)보유로제(대한 기로)보	이를 통해 : 사 <mark>및</mark> 외부 상 검토하고	개인정보의 정확한 · 검토를 주기적으	한 관리와 보호 로 시행한다. 라 폐기 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담당부서	정보보호처			수행시기	2024년 9월

6 총평

영향평가 대상사업인 도로교통혁신안전센터 개인정보 처리 관련 시스템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대상기관의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대상 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대상 시스템의 개인정보 생명주기별 보호조치를 분석·평가하였음

도로교통혁신안전센터와 해당 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점검 결과, 개인정보 침해대응체계 수립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취급내용에 대한 안내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함. 그러나 내부 관리계획과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등의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함

대상의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에 대한 점검 결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위탁, 파기 절차에 대한 항목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함. 하지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제공 등의 공정에서는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도출되었음

대상의 기술적 보호조치 체계에 대한 점검 결과 기타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양호한 상태라고 판단하였음. 다만 기타 기술적 보호조치 측면에서 이행되고 있지 않은 사항이 많아, 보안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함

특정 IT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점검 결과, 대부분의 사항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도출된 개선사항들을 기반으로, 전반적인 보안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도출된 침해요인은 대부분 단기적으로 조치 가능한 사항이 많으므로, 개선계획을 충실 히 이행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관리가 필요함